

연구보고서 2000-10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研究陣》

연구자 : 이채문 (경북대 교수)

빈

면

목 차

I.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1
1) 연구의 내용	11
2) 연구의 모델	13
II.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5
1.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선행연구 및 그 한계성	15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실태	18
1) 유해업소의 개념	18
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규제	19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	22
4) 유해업소 단속현황	23
5) 유해업소 확산의 배경	25
3. 유해업소와 청소년	29
1) 유해업소 출입의 제요인	29
2)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2
III.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	37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기본철학	37
2. 국친사상	38
3. 도덕주의	42
4. 개별적 사법정의	43
5. 낙인이론	44

IV. 소년경찰의 국가간 비교: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6
1. 미국의 소년경찰	46
1) 소년경찰조직	46
2)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 경찰단계를 중심으로	48
3) 미국소년경찰의 직무내용	55
4) 미국 경찰의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55
2. 일본의 소년경찰	60
1) 일본소년경찰의 조직	60
2) 일본소년경찰의 활동	67
3) 일본소년경찰의 최근동향	74
3. 한국의 소년경찰 : 미국 및 일본 소년경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74
1) 소년경찰조직	75
2) 비행청소년의 사법체계	77
3) 경찰관련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79
4) 소년경찰의 선도활동	81
V.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경찰의 개입에 관한 실태분석	84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84
2. 측정도구	85
3. 자료분석	86
4.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8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
2)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91
3)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93
4) 유해업소출입과 관련된 경찰에 대한 태도분석	98
5) 경찰에 대한 기대역할과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활동	106

VI. 정책 건의안	109
1. 제도적 개선대책	109
1)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작성	109
2)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110
3) 청소년 지원센터의 건립	114
4) 경찰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감독권의 환수	117
5)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의 시민단속반 교육의 강화	118
6)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책임의 등급화	121
2. 홍보활동대책	122
1) 청소년 유해업소 마크의 개발 및 배포	122
 VII. 요약 및 결론	 125
 참 고 문 헌	 130
 설 문 지	 136

표 차 례

<표 2-1>	청소년 인구현황	18
<표 2-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규제조항	20
<표 2-3>	유해업소 현황	22
<표 2-4>	유해업소 단속실적(학교주변)	24
<표 2-5>	유해업소 단속실적(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	25
<표 2-6>	풍속영업소 현황	28
<표 2-7>	개인적 적응의 유형	34
<표 2-8>	집단시설이용과 청소년 유해도	36
<표 3-1>	국친사상의 유형	39
<표 4-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택	53
<표 4-2>	미국 소년경찰의 기능별 직무내용	56
<표 4-3>	일본의 소년경찰 관련조직	68
<표 4-4>	소년경찰 외곽조직의 역할	69
<표 4-5>	일본소년경찰의 가두보도활동	71
<표 4-6>	범죄예방교실 운영실적	79
<표 4-7>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80
<표 4-8>	청소년 고충상담실 운영실적	81
<표 4-9>	한국의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82
<표 4-9-1>	선도대상	82
<표 4-9-2>	유의사항	82
<표 4-9-3>	선도요령	82
<표 5-1>	조사대상자의 성별	87
<표 5-2>	조사대상자의 연령	87
<표 5-3>	조사대상자의 학력	88
<표 5-4>	조사대상자 부모의 생존	88

<표 5-5>	부의 직업	89
<표 5-6>	모의 직업	89
<표 5-7>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	90
<표 5-8>	조사대상자 가족소득	91
<표 5-9>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91
<표 5-9-1>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91
<표 5-9-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92
<표 5-9-3>	학교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92
<표 5-9-4>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92
<표 5-9-5>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93
<표 5-9-6>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93
<표 5-10>	유해업소 출입실태	94
<표 5-10-1>	소주방, 호프집, 카페	94
<표 5-10-2>	단란주점	94
<표 5-10-3>	전 화 방	95
<표 5-10-4>	노래연습장	95
<표 5-10-5>	PC게임방	95
<표 5-10-6>	비디오 감상실	96
<표 5-10-7>	전자오락실	96
<표 5-10-8>	숙박업소	96
<표 5-10-9>	윤락업소	97
<표 5-11>	유해업소 출입경험	97
<표 5-12>	유해업소 출입의 책임소재	98
<표 5-13>	유해업소 출입동기	98
<표 5-14>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	99
<표 5-14-1>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1)	99
<표 5-14-2>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2)	100
<표 5-14-3>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3)	100

<표 5-14-4>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4)	100
<표 5-14-5>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5)	101
<표 5-14-6>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6)	101
<표 5-15>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	102
<표 5-15-1>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1)	102
<표 5-15-2>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2)	102
<표 5-15-3>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3)	102
<표 5-15-4>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4)	103
<표 5-15-5>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5)	103
<표 5-15-6>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6)	103
<표 5-16>	경찰역할의 유형	104
<표 5-17>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	105
<표 5-17-1>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1)	105
<표 5-17-2>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2)	105
<표 5-17-3>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3)	105
<표 5-17-4>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4)	106
<표 5-17-5>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5)	106
<표 5-17-6>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6)	106
<표 5-18>	경찰의 기대역할과 경찰의 선도활동간의 관계	108
<표 6-1>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112
<표 6-2>	각국의 경찰·학교 연계 프로그램 사례	113
<표 6-3>	청소년 유해감시단 지정현황	11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모델	14
<그림 2-1>	대상에 대한 공간적 인접성의 영향	30
<그림 3-1>	유해환경과 관련한 국친사상의 유형	40
<그림 3-1-1>	원칙유형	40
<그림 3-1-2>	확장유형	41
<그림 4-1>	미국 소년경찰의 위치도(워싱턴주 타코마)	49
<그림 4-2>	미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50
<그림 4-3>	비행청소년의 처리에 대한 미국 소년경찰의 재량	54
<그림 4-4>	일본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63
<그림 4-5>	일본 소년경찰의 위치도(경찰청)	64
<그림 4-6>	일본 소년경찰의 위치도(東京都 경시청)	66
<그림 4-7>	한국 소년경찰의 위치도	76
<그림 4-8>	한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78
<그림 6-1>	청소년지원센터(가칭)	116
<그림 6-2>	청소년 유해업소마크의 예	123

비

면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 참사로 엄청난 청소년 희생자가 발생한 후, 우리사회에서는 한동안 잠잠하였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한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때 마다 본질적인 대책은 이미지 효과만 남긴채 실종되고, 똑같은 사고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온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학교주변 및 사회도처에 널려있는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취급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비행청소년들을 사법기관이 아닌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기관 같은 사회통제기관으로 위탁을 위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의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통하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ㄱ.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실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 실태, 단속현황 및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본다. 그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의 확산배경을 산업 구조적 측면과 대중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하며,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의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유해업소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ㄴ.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통제의 기본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통제의 기본철학을 국치사상, 개별적 사법정의, 도덕주의 및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ㄷ. 미국과 일본의 소년경찰의 역할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주로 다루는 소년경찰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예를 검토한다. 미국과 일본의 소년경찰의 조직, 사법체계 및 직무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주로 경찰단계에서 살펴보고,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비행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하고 이들의 비행을 어떻게 예방하는 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한국의 소년경찰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소년경찰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물과 정부간행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소년경찰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검토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게 되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 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 연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조사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통제실태는 크게 통제감독형, 갱생보호형, 적극형 및 무관심형 등으로 나누어 검토될 예정이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앞으로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경찰의 역할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ㄱ.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효과적 역할에 대한 대책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효과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경찰의 효과적 역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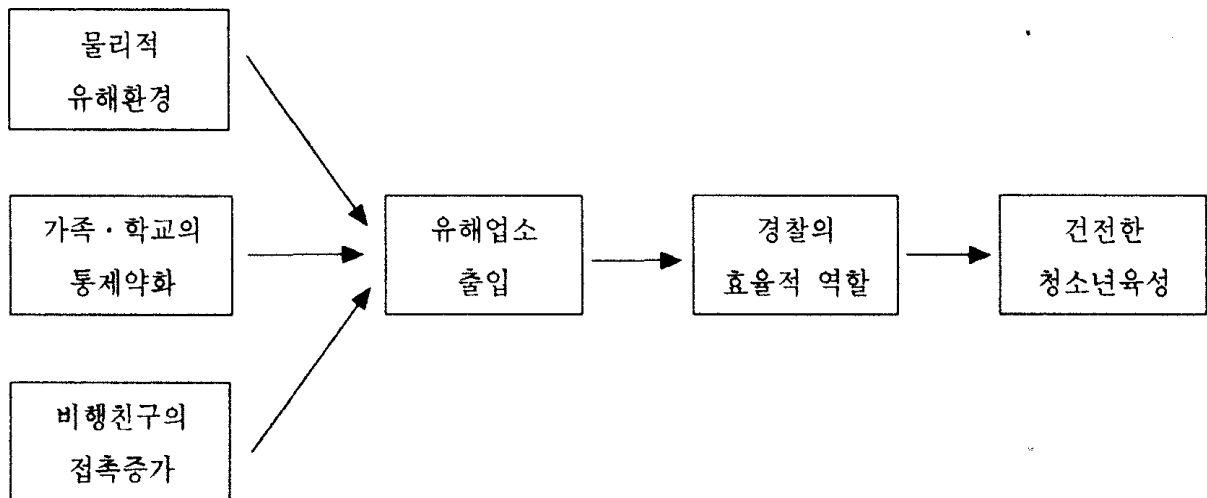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전체적인 모델로서 다음의 <그림 1-1>을 제시한다. 즉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연구동향 및 연구내용의 논의로부터 유해업소 출입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유해환경, 가족·학교의 통제력 약화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증가를 들 수 있다. 물리적 유해환경은 청소년 주변에 산재하는 유해업소의 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가족·학교의 통제력 약화 및 비행친구와의 접촉증가 등은 사회적 유해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모델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일차적 접촉기관으로서 경찰을 든다. 따라서 경찰역할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유해업소의 출입 청소년이 건전한 청소년 또는 비행자 내지는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본 모델은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분석에 근거하여 먼저 물리적 유해환경, 가족 및 학교의 청소년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비행친

구의 접촉여부 등이 어떻게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해소하는 기제로서 경찰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본 모델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모델



II.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선행연구 및 그 한계성

최근 심각한 청소년문제의 원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중매체의 유해성과 향락업소 중심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유해성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문제시하고 있다(노상우, 1993).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해환경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의 실태파악에만 주력함으로써 실제로 이들 유해환경 또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직접 선도하는 중요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주변의 유해환경억제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그 비행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찰의 역할이나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상당한 연구상의 공백이 존재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유해환경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존연구의 미비점을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려고 한다.

청소년과 관련한 유해환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요인에 관한 연구,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동기로서 김문조(1992:79-82)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유해업소의 흡입요인(pull factors)으로서 유해업소의 지리적 근접성과,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내모는 방출요인(push factors)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긴장, 그리고 유해업소와 청소년을 매개하는 매개요인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의 약화와 대안의 부족 등이다. 이와 관련하

여 김준호(1996)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다. 즉 사회적 환경으로서 비행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락용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한 가족 영향력으로서 가족의 이해나 사랑과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않을수록 오락성업소의 출입이 잦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물리적 환경, 예를 들어 학교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해업소가 있는가 하는 점은 그 유해업소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유해업소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해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서 쇼와 맥케이(Shaw and McKay, 1942)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이것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분야의 기존연구들은 유해환경과 청소년비행간에 관계에 관해서 이미 암묵적으로 '유해환경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진행시켰다(김준호, 1996). 이와 관련하여 유재천(1989)은 잡지, 만화, 방송, 영화 등의 정보환경상의 유해환경이 성적 호기심의 자극이라는 유해성의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환경 가운데서도 이중한(1989)은 저질성의 잡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상락(1994)은 부산지역의 유해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의 온상으로서 이용되는 실태를 보고하고 있으며, 유혜경(1986)과 김준호(1987)는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비행의 내성(耐性)이 유해환경과 대단히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비행과 유해환경과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도종수 외, 1990; 체육청소년부, 1992).

세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및 그 대책과 관련한 연구들로서, 대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 시민, 그리고 국가(정부)를 들 수 있다(유수현, 1989; 도종수 외, 1991; 체육청소년부, 1991:330-358; 문화관광부, 1998:429-509). 먼저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건전한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유해업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이에 저촉된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지도 및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학교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해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 및 사회의 교실화 운동 등을 촉구하고 있다(李揆美, 1991).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책으로서 입시

위주 교육제도의 개선, 유해업소의 이전, 폐쇄 및 특별구역화(한명섭, 1991)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과 관련한 유해환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소나 사회구조적 요소에서만 구하려는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출입의 원인으로서는 청소년 자신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을 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점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청소년의 개인적인 병리현상 또는 청소년들 둘러싼 사회구조적 병리현상을 제거하려는데만 초점을 둬므로써, 비행청소년들을 다루는 기관(警察)이나 이들을 다루는 사람(警察官)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행청소년들을 다루는 기관(警察)이나 사람(警察官)의 중요성은 낙인이론에 의해서 특히 강하게 주장된다. 즉 1960년대에 들어와서 청소년 범죄에 관해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낙인이론이 제기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행을 범죄로 심화시키거나 비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Lemert, 1951)이 형사학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낙인이론에서는 범죄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행 담당기구나 담당자의 운용방식에 따라서 비행행위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이것은 1960년대 선진국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에서 문제소년을 전환(轉換: diversion)시키는 것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화 및 성인범화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金甫煥, 1992)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도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 특히 경찰 단계에서 청소년 비행자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룰 주제는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에서 비행청소년, 특히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단계인 경찰통제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서 이들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심화될 수도 있고, 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실태

1) 유해업소의 개념

청소년 유해업소는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분류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 등을 지칭하며(김문조·이성식, 1994:183), 일부 학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비행이 우려되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로서의 유해환경을 포함하기도 한다(도종수 외, 1990:55-56).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을 대개 “청소년¹⁾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매체물, 장소, 기회,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藤本哲也, 1985:19-20), 일부 학자들(강대근, 1984; 한준상, 1991)은 청소년의 인간적 육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사회적·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환경 요인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

1) 청소년의 정의 또한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 2-1> 청소년 인구현황(1996년 현재)

구분	정의	총	남	여	비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12,833,969	6,732,841	6,101,128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12,441,970	6,425,297	6,016,673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 20세 미만	14,351,788	7,515,499	6,836,289	
아동복지법 제2조 1호	아동 : 19세 미만의 자	12,833,969	6,732,841	6,101,128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총인구 : 45,545,282

자료 :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http://www.youth.go.kr/uw/uw_disp.exe/data_room/s_data_room_1_056.htm: 검색일 2000년 3월 29일)에서 재인용)

체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개념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지칭하는 단순한 물리적, 지리적 환경이외에도 언론매체와 대중매체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항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

(1)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2)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과 같은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규제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규제내용을 보면(<표 2-2>), 유해업소를 출입금지와 고용금지로 나눌 때 ‘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19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에 의하여 대부분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고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19세 미만자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2)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uw/uw_disp.exe/home_con.html 검색일 2000년 3. 28.]

<표 2-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규제조항

업종	구분	제한연령(적용법률)	벌칙
유흥주점	출입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단란주점	출입금지	19세 미만자(18세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목욕장업 (안마실설치, 개설구획영업)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숙박업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업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게임장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음반·비디오 판매점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비디오 대여점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비디오 감상실	출입제한	19세 미만자(보호자 동반시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풍속영업법 제10조 2호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노래연습실	출입제한	19세 미만자(보호자동반시 제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풍속영업법 제 10조 2호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업종	구분	제한연령(적용법률)	벌칙
노래연습장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만화대여점	출입금지	출입제한: 없음(청소년은 22:00까지 출입가능)	없음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도학원·무도장	출입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행행위장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출입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9세 이상, 20세 미만자(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성기구 판매업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한 물건으로 결정한)	출입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제24조 2항)	2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배소매업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제조, 판매취급인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티켓다방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소주방, 카페, 호프 등	고용금지	19세 미만자(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 제24조 1항)	3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bad_thing/s_bad_thing_2_004.html, 검색일 2000. 1. 31.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

<표 2-3> 유해업소 현황('98. 11. 30 현재)

(단위 : 개소)

업종 시·군·구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특 수 목욕탕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용업	숙박업	만 화 대여점
계	149,575	17,331	24,978	395	26,924	2,896	31,439	36,230	9,372
서울시	28,095	1,371	7,027	91	5,459	930	6,565	4,648	2,004
부산시	13,442	1,155	3,308	57	2,250	216	2,625	2,712	1,119
대구시	6,554	692	357	20	1,649	158	1,634	1,447	597
인천시	6,981	600	1,277	13	1,398	118	1,718	1,478	379
광주시	9,296	358	704	17	978	144	978	5,818	299
대전시	4,853	465	611	31	742	92	1,484	962	466
울산시	3,762	679	711	12	800	29	714	689	128
경기도	21,709	2,908	3,181	46	4,607	434	4,902	4,262	1,369
강원도	7,259	1,234	967	3	1,100	90	1,063	2,302	500
충청북도	4,175	603	458	16	681	59	980	1,174	177
충청남도	5,186	368	698	8	818	98	1,295	1,709	192
전라북도	5,882	942	639	6	985	160	1,187	1,449	514
전라남도	7,211	1,178	884	6	1,281	70	1,619	1,766	407
경상북도	10,942	1,909	1,416	20	1,969	146	2,195	2,737	550
경상남도	11,261	2,365	1,771	21	1,945	125	2,089	2,418	527
제주도	2,957	504	942	28	262	27	391	659	144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uw/uw_disp.exe/home_con.html] 검색일

2000. 1. 31.]

1998년 11월 30일 현재, 전국적인 유해업소의 총계에 관한 통계를 보면(<표 2-3>) 숙박업소가 2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업(21%), 노래연습장(18%), 단란주점(16.7%), 유흥주점, 만화대여점, 비디오감상실, 특수목욕탕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유해업소의 수가 전국 149,575업소 중에서 약 18.8%인 28,095개였고, 그 다음이 경기도의 21,709개, 부산시(13,442), 경상남도(11,261), 경상북도(10,942), 광주시(9,296), 강원도(7,259), 전라남도(7,211), 인천시(6,981) 등의 순이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 및 제주도에서는 유해업소들 중 단란주점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 각각 전체 유해업소들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24.6%, 31.85% 등이었다. 대구시와 울산시에서는 지역전체 유해업소들 중 노래연습장이 25.16%와 21.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와 대전시, 경기도 등에서는 유해업소의 수가 24.6%, 30.57%, 22.58% 등으로 지역전체 유해업소들 중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지역에서는 숙박업이 각 지역의 유해업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 유해업소 단속현황

유해업소 단속은 학교주변의 단속 및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의 단속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주변의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학교 인근의 유흥주점, 만화대여업소, 비디오대여업소, 숙박업소,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목인, 술·담배 제공행위, 음란물 판매 및 대여행위, 남녀혼숙, 시간외 영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문화관광부, 1999:378).

전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표 2-4>), 1998년의 위반건수는 총105,443건으로 1997년 보다 34,384건이 증가하였다. 또 1997년에는 총 71,059건을 적발하여 93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0,129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즉심 및 계도·훈방하였다. 위반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을 11,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성년자 주류제공(6,207), 미성년자 출

입목인(4,936), 미성년자고용(2,547) 등의 순이었다. 1998년에도 유사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위반건수 105,443중에서 1,348명을 구속하고 기타 104,09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즉심, 훈방조치를 취하였다.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1997년의 경우와 같이 시간외영업이 18,4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성년자 주류제공(10,892), 미성년자 출입목인(6,141), 미성년자고용(2,822) 등의 순이었다.

<표 2-4> 유해업소 단속실적(학교주변)

(단위 : 건)

구분	계	위 반 내 용								조 치				행정 처분
		미성 년자 고용	미성 년자 주류 제공	미성 년자 출입 목인	윤락 행위 남녀 혼숙	시간 외 영업	불량 만화 음란 비디오 방영	도박 사행 행위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기타 (계도 훈방)	
1997	71,059	2,547	6,207	4,936	795	11,501	1,707	1,060	42,306	930	55,254	7,472	7,403	45,070
1998	105,443	2,822	10,892	6,141	1,421	18,490	1,488	1,841	62,348	1,348	90,393	4,212	9,490	66,876

자료 : 문화관광부(1999:422)

다음으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에서의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표 2-5>) 풍속영업소의 미성년자출입 목인, 윤락행위 및 남녀혼숙의 목인, 음란비디오 방영, 미성년자 고용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에는 총11,112건을 적발하여, 385명을 구속하고 8,46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그리고 2,260명을 즉심에 회부하였다.

단속의 구체적 내역에 관해 1997년과 1998년을 비교하여 보면 풍속영업소의 미성년자출입 목인과 미성년자고용행위에 있어서는 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윤락행위 및 남녀혼숙의 목인에 있어서는 단지 3건이 증가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음란비디오 방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1997년의 99건에서 1998년에는 50건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2-5> 유해업소 단속실적(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

(단위 : 건)

구분	계	단 속					처 리			행정 처분
		풍속 영업소 미성년자 출입목인	윤락행위 남녀혼숙 목인	음란 비디오 방영	미성년자 고용행위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1994	3,849	751	422	33	99	2,544	114	2,354	1,381	2,005
1995	5,314	1,045	187	90	165	3,827	158	3,450	1,706	3,286
1996	7,764	1,137	187	79	384	5,977	177	6,047	1,540	5,352
1997	8,439	1,116	256	99	489	6,479	205	5,642	2,592	4,820
1998	11,112	1,492	259	50	693	8,618	385	8,467	2,260	6,868

자료 : 문화관광부(1999:422).

5) 유해업소 확산의 배경

유해업소의 확산에 대한 설명은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대중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ㄱ. 산업구조적 측면

유해업소 확산의 배경은 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등장한 것은 저개발국의 3차 산업과잉비대론이다(Evans & Timberlake, 1980; Bell, 1973). 이 이론에 의하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TNC)에 의한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는 당사국의 3차산업의 비대화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저개발국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는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당사

국의 2차산업을 약화시키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농인구를 2차산업에서 흡수할 수가 없게 되므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도시의 저개발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에서 흡수되지 못한 이들은 도시의 3차 산업에 유입되어 서비스업은 더욱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농촌의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유입되어 일부는 제조업중심의 2차 산업부문에 흡수되었으나 유입인구중 상당수는 유희노동력과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되어 서비스업에 편입되었다(김문조·이성식, 1994:183-4). 더욱이 이들은 숙련기술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2차 산업에서 흡수되지 못한 관계로 서비스업의 종업원, 행상, 일용노동 및 향락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한국의 '향락적 서비스업'의 증가추세는 선진국사회에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생산적 서비스 산업'이 확대된 경우와는 상이한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접대경제의 만연³⁾, 투기와 불로소득의 증대, 건전한 투자기회의 부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김문조·이성식, 1994:18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수출주도형 정책은 대기업을 기형적으로 육성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윤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또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흡수로 중소기업형의 자금이 향락산업으로 전도되어 비생산적인 3차 산업이 번성하게 된다(표갑수, 1998). 이와 관련하여 수출중심형 산업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축적의 방편으로 저곡가 및 저임금정책이 추진되었고, 농촌이 주변화되며 이농민들의 도시이주로 과잉도시화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향락적 소비는 유희업소인 향락산업의 번창으로 연결되었다.

3) 서울YMCA (1990)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향락문화의 번성은 기업접대문화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등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업의 접대문화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거래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내·외국의 고객(buyer)을 상대하는데 이때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 향락문화적 접대방식이며, 이러한 기업의 폭증하는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향락문화가 급속히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여성을 하나의 성적대상으로 취급하여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여성은 여성의 노동보다 여성의 성이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산업투자에 대한 이윤의 회수를 위해서는 기술숙련과 같은 영역에서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향락산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적 기술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적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향락산업에 대한 투자증가는 유해업소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에는 힘든 노동을 기피하고 수단 보다 목적을 중시하는 가치체계의 혼란 등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일부 향락산업중 영세업소들은 영세적 자본규모의 한계로 인해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위치하여 도덕적 설득이나 계몽 또는 행정적 조치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영세 향락산업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형을 이루기도 한다(김문조·이성식, 1994:184).

나. 대중문화적 측면

대중문화적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와 같이 산업화로 인해 발생되는데, 먼저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사회를 떠나 도시로 몰려온 많은 이촌향도민들은 과거 농촌에서 즐겼던 민속적인 서민문화를 버리고 대중문화에 의한 새로운 도시적 문화와 오락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 정책은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상실과 사회규범의 혼란과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곧바로 천민적 몰욕주의, 성윤리의 파괴, 도덕적 문란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이와 같이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대중문화⁴⁾는 무규범 상태를 가져와 유희지향적, 쾌락지향적, 그리고 소비지향적인 심리상태를 초래하였고(이강수, 1980), 이는 곧바로 상업성에 의한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유해업소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4) 산업화로 인해 형성된 대중문화는 성의 상품화와 대중매체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서울 YMCA, 1990). 특히 한국에서의 성의 상품화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들 선진국에서는 성의 상품화가 부를 축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전달과정에서 문화의 그레삼 법칙이 지적하듯이 성의 상품화와 관련된 저질의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에 앞서 전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TV나 신문,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들은 대중들의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즉 대중매체들은 부의 축적만이 지상의 과제로 여겨 도덕적 동기보다 경제적 동기를 우선시함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된 향락문화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기형적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향락적 유흥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향락적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풍속영업에 하는 업소의 숫자이다.

<표 2-6>

풍속영업소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특수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이용업
'93	105,766	11,846	1,137	27,528	863	12,137	17,718
'94	146,423	15,387	10,059	27,528	1,231	13,982	23,430
'95	164,123	12,909	15,585	32,786	855	14,552	28,087
'96	173,555	16,422	19,059	30,021	565	14,202	28,309
'97	181,155	16,874	23,079	30,909	415	14,832	29,708
'98	174,631	16,417	23,275	30,001	313	15,482	27,323

구분	비디오테이프 판매·대여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93	18,098	620	40	15,779
'94	33,270	769	55	20,712
'95	37,924	834	56	20,535
'96	41,235	1,002	51	22,689
'97	38,980	1,097	61	25,200
'98	33,382	1,207	69	27,162

자료 : 경찰청 [<http://www.npa.go.kr/h6-1-3.html> 검색일 2000. 1. 31.]

풍속영업소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를 보면(<표 2-6>), 1993년에서 1998년까지 특수목욕장업 및 비디오판매·대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풍속영업소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풍속영업소의 수는 1993년의 105,766건에서 1998년의 174,631건으로 약 65%가 증가한 것을 위시하여, 같은 기간중 단란주점이 약 19배로 가장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 순서는 무도학원(94.7%), 비디오테이프 판매·대여(84.4%), 무도장(72.5%), 노래연습장(72%), 이용업(54.2%), 유흥주점(38.6%), 게임제공업(27.6%), 숙박업(9%) 등의 순이다.

3. 유해업소와 청소년

1) 유해업소 출입의 제요인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청소년과의 공간적 인접성,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방출하는 요인 및 공간적 인접성과 방출요인을 강화시키는 요인 등의 3가지로 흔히 요약할 수 있다(김문조·이성식,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26; 김문조, 1992).

가. 공간적 인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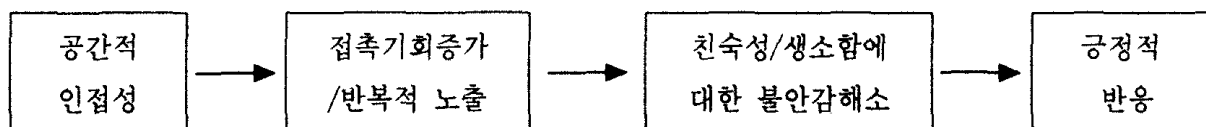
첫 번째는 유해업소가 청소년 주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이는 흔히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유인요인(pull factors)으로서 설명된다.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 환경이 집,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공간적 인접성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인접성은 고전적인 범죄학자 Zajonc(1968)과 Shaw & McKay(1942)의 이론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Zajonc은 <그림 2-1>에서 보다시피 특정한 대상과의 공간적 인접성(propinquity)은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유해업소가 청소년 주변에 위치한다면 청소년들은 유해업소에 대해 잦은 접촉을 통해서 그에 대한 생소감이 감소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에 대한 친밀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친밀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업소나 소비향락문화의 잠재적 소비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유해업소의 공간적 인접성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런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성폭행이나 폭력적 비행은 거주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업소의 공간적 인접성과 청소년의 출입에 관한 논의는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과 관련시켜 고려해 볼 수 있다.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결속의 붕괴나 약화 때문이라고 보며, 사회적 결속에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나 조직에 대한 애착(attachment), 관여(invovement), 헌신(commitment), 그리고 투여(investment).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추론해 볼 때, 유해업소의 공간적 인접성은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애착, 관여나 헌신 등의 결속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대상에 대한 공간적 인접성의 영향



자료 : Zajonc(1968), 김문조·이성식(1994:189) 재인용.

ㄴ. 방출요인

방출요인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 제도적 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유해업소로 몰아가는 요인을 말한다(김문조·이성식,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26; 김문조, 1992). 특히 청소년의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가정, 학교 및 친구집단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제도적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유해업소로 내몰리는 과정을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가정은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중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일부 국가, 특히

한국에서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정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핵가족화로 가족간의 대화부족, 가정교육의 미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무관심 또는 지나친 기대 등은 바로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유해업소로 내모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학업성적에 치중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들간의 견해차이는 대화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0년대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73%의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으며”, 78%가 자녀와의 세대차를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화부족을 잘 나타내고 있다(한승희 외, 1990).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학교에서의 부적응인데, 지나친 학력중시풍조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성적위주의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이러한 성적위주의 분위기에서 탈락하거나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열등감과 불만 및 교사의 무관심 속에 문제청소년화하면서 유해업소로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공부압력”이 한국 청소년들의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1990; 남재봉, 1990).

이와 관련하여 친구관계 또한 지나친 입시위주의 사회풍토와 입시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친구관계라기보다는 편협한 친구관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폭넓은 전인적 관계가 결핍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업을 중요시하지 않은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비행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도종수, 1991) 이들이 주로 유해업소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㉔. 강화요인

강화요인은 위에서 설명한 유해업소의 공간적 근접성과 유해업소로의 방출요인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강화요인에는 공적 통제체제의 약화와 청소년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약화시켜줄 대안의 부족을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8:26; 김문조·이성식, 1992:193-4).

공적 통제의 약화는 청소년들에 의한 유해업소 출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법적 장치의 미비와 행정당국의 문제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관한 앞의 <표 2-5>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내에서 풍속영업소 업주에 의한 미성년자출입목인이 1997년의 경우, 총 단속건수 8,439건 중에서 1,116건으로 약 13.2%를, 1998년의 경우 총 단속건수 11,112건 중에서 1,492건으로 약 1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내모는 경우도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부나 학교시간 이외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잠재적 욕구가 상존하고 있다(권이중, 1992:90-92).

2)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ㄱ. 유해업소의 영향에 관한 이론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차별접촉이론과 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

먼저 유해업소의 출입은 평상시의 규범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반규범적 태도

5) 유해업소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중심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다.

- ㄱ) 유해업소가 직접적 비행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유해업소에서 성인영화나 포르노잡지를 봄으로서 성욕의 자극에 의해 성폭행이나 외설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혹은 게임방에서 돈을 모두 날린 후, 게임을 더 계속 하기 위해 걸가는 소년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거나 근처의 상점에서 돈을 훔치는 경우
- ㄴ) 유해업소가 비행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텔이나 러브호텔 등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성비행, 흡연, 본드흡입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되는 경우
- ㄷ) 유해업소가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을 가속화시켜 그 사람을 매개로 하여 비행이 심화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번화가를 걷다가 근처의 유해업소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제를 시작하여 함께 불순한 성행위나 성교제에 이르는 경우다. 커피숍 등이 원래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이러한 장소나 시설을 매개로 하여 기타 불량배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되어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内山紬子(1985), 「風俗環境と少年非行」, 『法律時報』 第57卷 第7號, pp. 13-14를 참조하라.

나 가치의 학습기회를 증가시킴으로서 비행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문조·이성식, 1994:194-5). 이러한 의미에서 유해업소의 출입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를 사회학습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바로 이 사회학습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다른 모든 행동이 학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행위 또한 학습의 결과이므로 유해업소에 많이 출입하게 되는 청소년일수록 학습에 의한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학습이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며, 개인이 비행문화와 접촉하여 사회화됨으로써 비행규범과 행위를 학습하는 것으로 본다. 차별접촉이론의 명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therland & Cressey, 1978:80-82).

- ㄱ. 비행행위는 학습된다.
- ㄴ. 비행행위는 의사소통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
- ㄷ. 비행행동의 주된 부분의 학습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발생한다.
- ㄹ. 비행행동이 학습될 때, 그 학습은 (a)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간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법, (b) 특정한 방향의 동기, 충동, 합리화 및 태도를 포함한다.
- ㅁ. 특정한 동기와 충동의 방향은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규정된 법령으로부터 학습된다.
- ㅂ. 사람은 법률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보다 우호적인 규정이 과도하기 때문에 비행자가 된다.
- ㅅ. 차별교제는 빈도, 지속성, 우선성 및 강도 면에서 다양하다.
- ㅇ. 비행 및 반비행양식과의 접촉을 통한 비행학습과정은 다른 학습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 ㅈ. 비행행위가 일반적인 요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반비행적 행위도 일반적인 요구와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구가 가치관으로 비행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접촉이론에 의하면 비행을 저지르는 자는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함으로써 반(反)비행행위보다 비행행위에 많이 노출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접촉이론의 결점 중의 하나는 경험적 검증이 곤란하다는 점인데 유해업소의 출입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특정 유해업소으로부터, 어떤 특정행위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학습했는지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일 것이다.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의하면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유해환경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적응문제에 초점을 둔다(Gibbons, 1981). 이러한 긴장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머튼(Merton, 1957)인데 머튼은 한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그 사회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 의해 긴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아노미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비행을 낳게 된다고 본다.⁶⁾

이것을 유해업소의 출입과 관련시켜 볼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유해업소의 출입청소년들은 건전한 방식을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유해하다고 판정된 오락실, 극장, 퇴폐이발관, 사창가 등의 유해업소를 통해서 긴장을 해소하려고 한다. 여기서 유해업소를 포함한 유해환경⁷⁾이 이곳을 출입하는

6) 머튼(Merton, 1957)은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적 수단(institutionalized means)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의 압력에 개인이 대처하여 상응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2-7> 개인적 작용의 유형

적응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동조(conformity)	용납(+)	용납(+)/ 非일탈
혁신(innovation)	용납(+)	거부(-)/일탈
의례주의(ritualism)	거부(-)	용납(+)
폐배주의(retreatism)	거부(-)	거부(-)
반역(rebellion)	용납(+)/거부(-)	용납(+)/거부(-)

7) 유해환경에는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비행성 또래집단, 열악한 학교환경, 상업성에 기반한 저급한 대중매체, 지역사회의 해체현상,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빈곤, 불량 주거공간, 가정불화 등도 포함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8:47).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8:47).

나. 유해업소와 유해성

다음은 유해업소가 지니고 있는 유해성의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의 요소로서는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및 '비행화' 등을 들 수 있다(이광호, 1992:205-6).

'청소년 건전성장의 저해'로서의 유해업소의 유해성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기보다는 성적 감정의 자극, 폭력성 조장, 범죄성 및 공포심의 조장, 청소년 도덕성의 손상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 '피해'로서의 유해업소의 유해성은 청소년 정서발달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행화'로서의 유해업소의 유해성은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이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해성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의 이용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살펴 보자. 1990년 24세 미만인 5,000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표 2-8>) 이용률과 유해도 간에 뚜렷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용률이 10%대 이하로 아주 낮은 성인오락실, 퇴폐이발소, 사창가, 음란물노점상, 심야만화가게 등의 유해도가 각각 86.2%, 89.3%, 82.9%, 88.4%, 84.1% 등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자신들의 인식으로도 가장 유해한 업소 및 장소로 간주된다. 그 다음으로 이용률이 20%이하인 곳은 당구장(68.4%), 성인디스코장(81.0%), 디스코장(66.8%), 유흥가(84.7%) 등으로 여전히 유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장소로서 유해한 곳으로 평가되는 곳에는 전자오락실(49.1%), 카페(55.8%), 만화가게(39.4%), 비디오가게(41.4%), 소극장(30.5%), 일일찻집(32.9%), DJ커피숍(31.7%) 등이 있다. 반면에 경양식집(12.7%), 패스트푸드(8.2%), 각종 학원(9.2%), 사설독서실(15.8%) 등은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8>

집단시설이용과 청소년 유해도

(단위 : %)

시설 및 장소	이용률		유해도	
	전체	남자고등학생	전체	남자고등학생
공원	80.2	82.6	4.6	4.0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22.9	25.6	56.8	47.2
전자오락실	64.1	92.5	49.1	30.1
성인오락실*	6.4	10.2	86.2	81.9
당구장	17.4	43.2	68.4	46.9
롤라스케이트장	59.0	61.2	22.3	20.6
디스코장	18.4	17.1	66.8	55.7
성인디스코장*	12.6	7.0	81.0	78.1
퇴폐이발소*	4.0	4.2	89.3	90.1
경양식집*	71.0	79.2	12.7	6.7
카페(주류도 판매하는 곳)*	32.0	43.0	55.8	43.9
일일찻집*	27.5	27.6	32.9	33.4
DJ커피숍*	31.5	29.2	31.7	26.3
포장마차*	39.8	46.6	25.5	20.4
음악감상실*	34.7	26.9	6.5	5.9
만화가게	56.6	78.2	39.4	25.9
심야만화가게*	10.0	17.4	84.1	79.4
사설독서실	26.4	63.1	15.8	10.5
제과점	91.1	89.0	2.2	1.3
분식점	92.5	94.5	5.2	2.0
패스트푸드(햄버거 집 등)	69.8	71.6	8.2	5.7
비디오 가게	50.6	62.7	41.4	36.4
입시 및 각종 학원	61.6	62.1	9.2	9.0
음란출판물 파는 노점상	9.5	26.0	88.4	81.2
문방구	97.1	97.4	2.5	2.6
사창가*	7.8	10.8	82.9	81.8
유홍가*	15.1	25.3	84.7	81.3
소극장*	62.1	72.7	30.5	27.1

* 초등학생용 질문지에서 제외된 문항임. 자료: 도종수 외(1990:62)

Ⅲ.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기본철학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 욕구와 현실사이의 괴리, 이상과 능력사이의 불일치 등의 위기가 나타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와 같은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보호는 경찰관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며,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에는 생활환경의 위험제거나 단속, 시민복지단체와의 협력, 건설적인 법령제정에의 협력, 청소년들을 위한 순찰활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범죄자들의 체포, 비행소년들이나 성인범죄에 희생이 된 청소년들의 신원을 밝히지 말 것 등이 있다(Kenney and Pursuit, 1979:82). 이와 같은 경찰의 기능은 경찰의 재량권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의 비행통제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논란이 된다. 결국 그것은 사법통제와 행정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찰로 하여금 이 기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통제의 기본 철학을 이루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다. 즉 국친사상(Parens Patriae), 도덕주의, 개별적 사법정의 및 낙인이론 등이다. 이러한 기본사상은 보호 및 복지주의의 소년형사사법제도를 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비행청소년의 처리를 위한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이 되고 있다(金甫煥, 1992). 따라서 경찰의 청소년비행 처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통제의 기본철학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통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국친사상, 도덕주의, 개별적 사법정의 이념 그리고 경찰전환의 근거가 되는 낙인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다.

2. 국친사상

국친사상(國親思想: *Parens Patriae*)은 ‘국가는 아버지다’⁸⁾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로 본다면 국친사상은 “전통적으로 유아, 금치산자, 정신박약자와 같이 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국왕이 보호자로서 보유하는 역할”로 보여진다(柳本正春, 1994:7). 오늘날 이것은 국가가 궁극적 권위자로서 ‘여러 가지 곤경으로 인하여 지도나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곤경에는 연령, 질병, 정신적 쇠약 또는 미성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친사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사상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비행소년 등을 비롯한 특별한 부류의 소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⁹⁾ 이러한 국친사상의 함의는 그 후 구미의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법에 반영되었다.¹⁰⁾

8) 라틴어 본래의 의미는 국가를 부모와 동일시하는 “the parent of the country”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Trojanowicz & Morah, 1992:176).

9) 국친사상의 기원은 중세기 영국의 형평법(衡平法)재판소(Chancery Court)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영미법 체계 하에서는 판례를 기초하여 보통법(Common Law)을 준거법으로 하는 재판소와 15세기에 발전된 형평법(Equity)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재판소가 있었다. 형평법은 전통적으로 보통법을 엄격히 적용한 경우 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으며, 형평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봉건적 신분관계라든가 왕권의 대행자로서 대법관(Chancery)의 권한에 속하는 소송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본래의 역할 외에도 연약한 자가 정당한 봉건적 지배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희생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기 시작하였다(柳本正春, 1994:7-8).

10) 예를 들어 국친사상이 1899년 7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주의회에서 통과된 포괄적 청소년 재판법에서도 포함되어 있음을 다음의 법조항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1. 청소년 재판법은 부양아동, 유기(遺棄)아동 그리고 비행아동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보유한다.
2. 청소년 재판법은 처벌보다는 선도, 보호, 갱생에 초점을 둔다.
3. 청소년 재판법은 약식소송절차를 설치하여, 공식적 범죄절차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앤다.
4. 소년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는 기존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정에서 법관을 특별히 임명하였다.
5. 교도소나 경찰서에 12세 이하의 소년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 아동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아동의 보호관찰을 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을 두었다.(Robert C.

<표 3-1>

국친사상의 유형

관련학자	유형	내용
G. Dworkin	순수형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화와 같이 간섭·개입을 받는 사람과 보호·이익을 받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
	비순수형	담배의 제조·판매금지와 피해자의 경우처럼 간섭·개입을 받는 사람과 보호·이익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M.D. Bayles	적극형	퇴직연금의 적립이나 수혈과 같이 간섭·개입을 받는 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경우
	소극형	자살이나 약물중독의 방지와 같이 간섭·개입을 받는 자의 자기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
J. Feinberg M.D. Bayles	강한형	간섭·개입을 받는 자의 행위가 임의적이더라도 간섭·개입하는 경우
	약한형	간섭·개입을 받는 자의 행위가 비임의적인 경우에만 간섭·개입하는 경우
N. Fotion	강제형	간섭·개입의 강제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
	비강제형	권고와 같이 긍정적인 제재에 호소하는 식으로 강제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경우
P. Devlin	신체적·물리적형	피개입자가 자기자신에 대해 야기하려는 피해가 신체적·물질적인 피해인 경우
	정신적·도덕적형	피개입자가 자기자신에 대해 야기하려는 피해가 정신적·도덕적인 피해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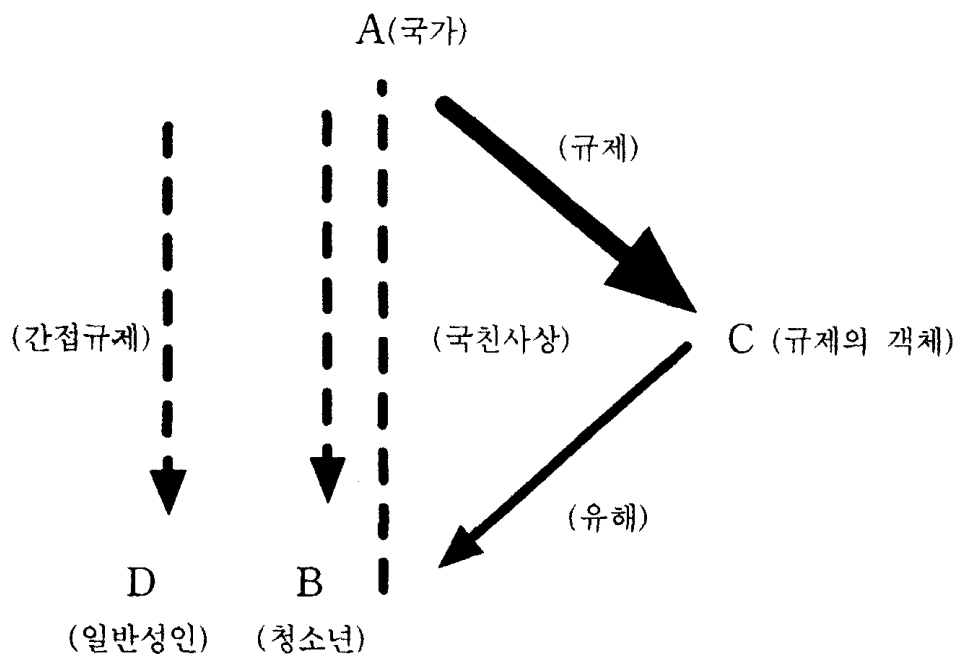
자료 : 藤本哲也. 1987. 「有害環境の規制とパターンリズム」 『法學新報』 第93卷 第6・7・8號, pp. 187-188.

Trojanowicz & Merry Morash, *Juvenile Delinquency: Concepts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pp, 1992, p. 178).

반면 확장유형(擴張類型)은 음란물이나 유해업소의 규제와 같이 간섭이나 개입을 받는 사람과 보호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이런 경우 청소년은 음란물이나 유해업소와 같은 객체(C)에 대한 국가의 규제행위를 수용하거나 반대로 그 객체(C)에 대한 규제행위를 요구 할 수도 있다(<그림 3-1-2>).

<그림 3-1-2>

확 장 유 형



자료 : 藤本哲也, 1987. 「有害環境の規制とパターナリズム」 『法學新報』 第93卷 第6・7・8號, pp. 189.

국친사상은 기본적으로 현대 범죄학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제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비행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외적 사회적·국가적 통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Hirschi, 1969; Matza and Sykes, 1961).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비행자이고 범죄자이므로 사회적 연대나 통제가 약해지면 언제라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실제로 형벌이 비행소년을 처벌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구소련과 동구제국 등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친사상이

소년비행처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 물론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과 영국에서 복지주의적 경향과 옹보·사법주의간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으나 국친사상이 여전히 소년형사 사법제도의 기본철학임이 드러나고 있다.

3. 도덕주의(Moralism)

도덕주의는 윤리나 사회도덕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에서는 법에 의한 사회도덕의 유지가 강조된다. 따라서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¹¹⁾가 없더라도 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그 개인의 행위가 반윤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藤本哲也, 1987:175-76). 이것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은 히라노(平野龍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형법의 목적이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보호에 있다 하더라도, 형법이 윤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윤리적으로 악이라는 인간의 의식과 동떨어져서는 그 처벌도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한도내에서 형법과 윤리는 중첩되며,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즉, 형법의 목적은 윤리의 실현 그 자체이며, 살인이나 절도를 처벌하는 것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역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은 그것이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때 이를 합법적 모랄리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²⁾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볼 때, 유해업소 그 자체가 타인, 특히 청소년의 권리

11) 일반적으로 '침해의 원리(harm principle)'에서는 다음의 후지모토의 주장 보듯이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侵害原理においては、「個人の他者に對する侵害」を防止するという目的だけが規制を正當化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が、その場合、侵害の對象は市民の個人的生活利益(生命、身體、自由、財産の安全)の侵害に限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すにわち、市民的安全の保護を目的とする規制だけが正當化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藤本哲也, 1987:175).

12) 平野龍一·『刑法の基礎』東京大學出版會(1966), p. 102, 藤本哲也(1987:175-76)에서 재인용.

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의 존립을 위하여서는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유해업소에 대해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개별적 사법정의

개별적 사법정의에서는 ‘각 개인은 상이하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형사재판이나 범죄 그리고 형법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범죄인 개인에 치중한다. 여기서 사법정의란 범죄에 따른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범인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Jeffrey, 1977:21; 金甫煥, 1992). 따라서 개별적 사법정의는 비행자에 대한 개별처분이나 처우를 의미한다.

개별적 사법정의에서 경찰의 개입은 엄격한 형사처분으로부터 청소년을 구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바,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신의 미성숙성과 청소년의 사춘기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를 위한 보호주의적 처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10조에도 개별주의를 청소년보호의 원칙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나 처우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대상 청소년의 주위환경이나 인성을 중시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사법정의를 경찰에 의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의 처리와 관련시켜 볼 때, 경찰의 임무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발견하여 비행정도로만 판단하여 검찰이나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경찰은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한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학교, 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개개인의 인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기관일 수도 있다(김용우, 1994). 따라서 개별적 사법정의는 궁극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사법관리로서의 범죄통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

13) 물론 개별화된 사법(individualized justice)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부모로부터 떼어놓는가 하는 것이 중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부모가 친자의 자연적 성에 근거하여 자식을 애호·보호하는 자연법적인 권리와 문제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국가로 관리권한을 이전해야 하는 공법적인 권리간의 심각한 충돌이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이 되어왔다(李相賢 1997:16-17).

행예방과 개선, 교화라는 교육적 및 복지적 차원에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범죄의 발생보다는 어떤 비행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경찰의 개입에 의해 청소년에게 찍힐 수 있는 낙인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르마르트(Lemert, 1981)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로 나누고, 일차적 일탈이 반드시 이차적 일탈로 되는 것이 아니나 일탈자로 공식적인 낙인을 받게 될 경우 이차적 일탈이 되어 일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차적 일탈에 이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1) 먼저 일차적 일탈이 발생한 후 2) 이러한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의 처벌이 뒤따르고 3) 사회적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더 심한 일차적 일탈이 뒤따르고 4)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일탈자의 거부가 나타난다. 5) 그 다음 처벌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로 인한 극심한 일탈에 뒤이어 6) 사회는 일탈자를 공식적 낙인자로 공인되고 7) 오명과 일탈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일탈행위가 더욱 강화되며 8) 마지막으로 일탈자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일탈적인 지위와 이와 관련된 역할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mert, 1951:77). 특히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낙인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더욱 주목함으로써 이들의 후속행동이 쉽게 재확인되어 다시 낙인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낙인이론을 청소년비행에 적용시켜 볼 때, 경찰의 개입과 관련된 경찰의 자유재량 및 전환처분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청소년이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어느 정도의 청소년비행자를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회기관으로 전환(diversion)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경찰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환처분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청소년에 대한 사법적이고 공식적인 처분은 해당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르마르트가 이야기하듯이 공식적 처분을

내림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일차적 일탈자에서 이차적 일탈자로 바뀌면서 공식적 ‘일탈자’로 낙인찍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임무를 담당할 때, 가능한 한 비행청소년들을 부모의 보호하에 두고, 법원에 기록을 남김으로 생기는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목적과, 소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와 조력을 제공해 준다는 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경찰관은 청소년비행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를 체포 내지 연행할 수 있고, 소년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이관하기 전에 경고조치와 함께 석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행청소년을 처분함에 있어서 개입하는 경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소년경찰의 국가간 비교 :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주로 다루는 소년경찰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예를 검토한다. 미국과 일본의 소년경찰의 조직, 사법체계 및 직무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주로 경찰단계에서 살펴보고,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비행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하고 이들의 비행을 어떻게 예방하는 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한국의 소년경찰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소년경찰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1. 미국의 소년경찰

1) 소년경찰조직

미국경찰의 조직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군정부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연방경찰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나 각 주정부나 시·군정부 경찰의 경우 업무가 지역에 따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¹⁴⁾ 소년경찰의 조직 또한 다양한데, 예를 들어 1명의 경찰관이 소년경찰업무

14) 연방경찰은 주로 국가적 범죄 및 주와 주사이의 범죄단속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적 범죄란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행정수단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경우나 연방법에 의해 특별히 범죄행위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 불법총기나 폭발물제조, 밀수, 유가증권 위조, 우편물 약탈, 대통령암살 등의 행위이다. 주와 주사이의 범죄에는 여러 주에 걸친 범죄나 우편이용범죄 등을 말한다. 연방경찰업무는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관할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58-9).

· 연방법무부의 관할

- ①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② 연방경찰(US Marshal)
- ③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를 담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여명 이상의 경찰관이 소년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다(Kratcoski and Kratcoski, 1979:201).

다음에 첨부한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의 경우를 보면(<그림 4-1> 참조), 경찰서장의 관할하에 3개의 과(bureau), 즉 운영과(Operations Bureau), 조사과(Investigations Bureau) 및 행정지원과(Administrative Support Bureau) 등이 있다. 조사과 내에는 대인범죄계(Crimes Against Persons Section)와 대물범죄계(Crimes Against Property Section)가 있는데 청소년업무는 대물범죄계내의 청소년/약물남용방지반(Juvenile/DARE¹⁵⁾)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국의 경우 청소년 관계업무는 5개의 과(bureau)중 형사과의 소년부(Youth Division)에서 담당하며, 콜로라도의 덴버시의 경우 순찰부, 형사부, 소년부, 교통부, 기술부, 관리부 등 6개 중의 하나인 소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도인 워싱턴 D.C. 경찰국에서는 집행과, 관리과, 기술과, 감찰과 등 4개의 과 중에서 집행과에 소년계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계내에서는 소년범죄자의 체포, 소년비행의 방지, 소년범죄자의 처리, 유해환경지역의 감시, 소년비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평가, 폭주족의 단속 및 실종자의 수색 등의 임무를 처리하는 운용반, 소년비행실태를 분석하고, 소년재판의 결과를 분류, 관리하는 관리반, 그리고 소년의 건전 육성활동, 비행방지활동, 경찰소년클럽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행방지반 등의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치안연구소, 1997:47-8;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125).

④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⑤ 연방법시행지원국(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 연방재무부의 관할

① 주류·담배·총기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② 연방관세청(US Customs Service)

③ 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④ 연방비밀경찰(US Secret Service)

15) DARE는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의 약자로 약물남용억지교육을 의미한다. DARE Project는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이 내놓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Siegel and Senna, 2000:499-500).

2)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경찰단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소년법정은 1899년 일리노이 소년법정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생겨났다 (McCarthy and Carr, 1980). 물론 일리노이법 이전에도 기타 다른 주에서는 청소년 범법자들을 다루기 위한 기제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¹⁶⁾ 예를 들어 1874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소년범죄를 다루기 위한 소년법정설립에 관한 법을 기초하였고(Hahn, 1984:5), 1899년에는 콜로라도주에서는 교육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비공식적 소년법정을 설립하였다(McCarthy and Carr, 1980; Hahn, 1984:5).

<그림 4-2>는 미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1976년 형사 사법기준·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이 모델은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청소년 사법체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비행청소년이 체포될 때부터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략 다음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지(prevention)와 전환(diversion), (2) 소년법정 및 (3) 청소년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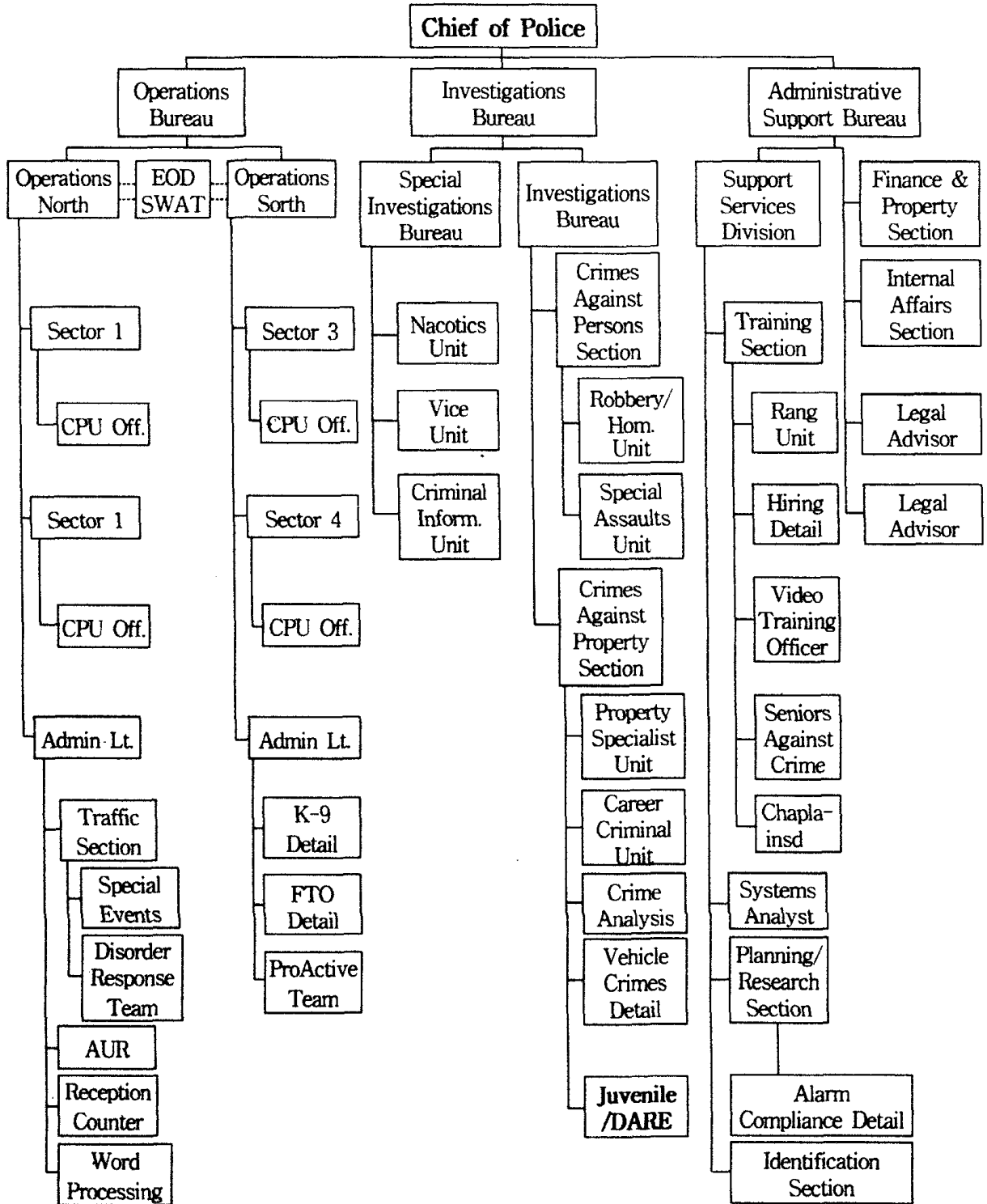
소년경찰이 청소년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시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업무는 소년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나, 순찰경찰이 소년관련 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 먼저 1차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난 후 소년경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경찰과 관련된 단계는 방지도단계와 사법과정단계의 초기이다(<그림 4-2> 참조). 여기에서는 주로 소년경찰과 관련된 단계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법과정의 방지와 전환단계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과 청소년 인테이크 요원(juvenile intake personnel)이 주로 결정한다. 경찰관이 청소년에게 구두경고나 훈방을 하지 않고 체포한 후에는 4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상담을 받고 부모에게 인계되는 경

16) 초기에는 미국에서의 청소년비행은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경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자원은 대부분 성인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난 후 청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한 자원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iegel and Senna, 2000:479).

우, (2) 지역공동체로 위임되는 경우와 전환의 경우, (3) 청소년 수용시설로 위임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4) 청소년 보호소로 이송되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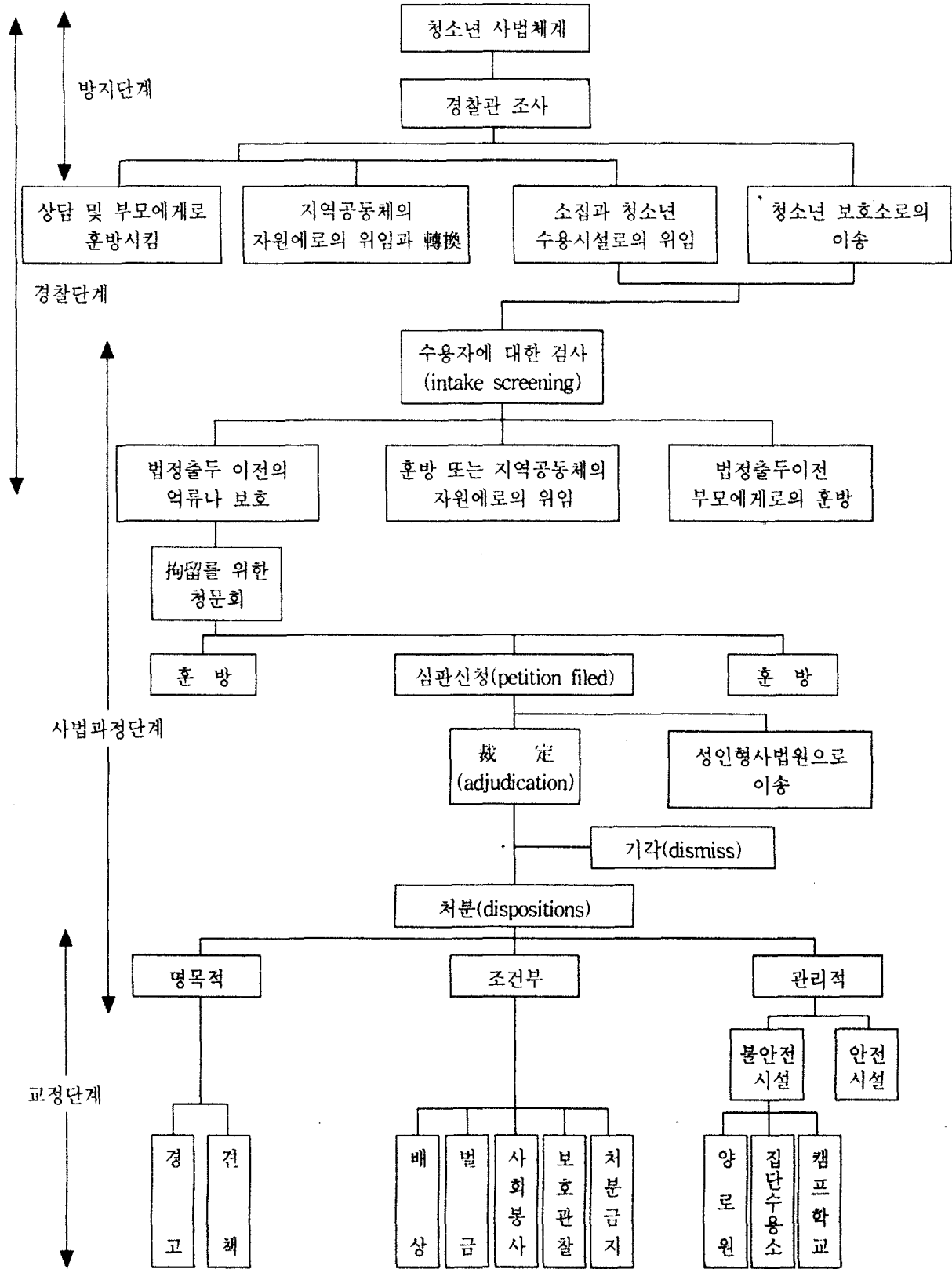
<그림 4-1> 미국 소년경찰의 위치도(워싱턴주 타코마)



자료 :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편), 『警察防犯論』(제1편)(경찰대학, 1998), p. 62.

<그림 4-2>

미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자료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Standards and Goals (1976:6)

여기서 (3) 청소년 수용시설로 위임되는 경우와 (4) 청소년 보호소로 이송되는 경우는 청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택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 청소년은 인테이크심사(intake screening)를 거쳐야 한다. 인테이크 심사는 청소년을 부모에게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후일 법정에서 출두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할 것인지, 또는 법정출두시기 까지 부모의 위탁하에 둘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인테이크심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들이 청소년 범죄가 발생된 상황과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이다.¹⁷⁾

인테이크심사가 끝나고 난 후 자치단체검사가 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함으로써 관련 청소년은 공식적으로 기소되는 사법과정단계가 시작되며, 마지막으로 관련 청소년이 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 처분이 내려지는 마지막 교정단계에 이르게 된다(<그림 4-2>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색다르게 인식되는 것은 전환(diversion)제도에 관한 것이다. 전환제도는 일정 소년사안을 소년법원의 사법처리단계에서 분리시켜 비행사적 또는 비사법적 처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사안에 따라 소년을 소년재판소에서 처리하게 하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자원, 즉 직업훈련소, 심성훈련소, 약물치료센터, 교육상담기관이나 기타 지역사회 봉사기관에 위탁하여 선도 및 교화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쓰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¹⁸⁾도 고려된 것이다(Champion, 1990:433-34).

17) 예를 들어, 청소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는가 또는 부모가 청소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범죄의 심각성으로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 청소년이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간주되는가? 관련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저능아는 아닌가? 관련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법원조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사회로 보냈을 때 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집행유예관리들이 심사를 하게 된다(Champion, 1990:433).

18)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1974년 텍사스경찰서의 소년계는 50%에 이르는 청소년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전환제도를 실시한 결과, 1975년에서 1982년 사이에 전환제도의 혜택을 입은 19,745명의 청소년비행자들중 재범율이 21%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Williams, 1984). 또 다른 사례로서 1981년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안즈에서 실시된 전환프로그램의 결과 이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약 80%는 전환제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

미국의 경우 <그림 4-2>에서 보듯이 인테이크심사(intake screening)의 단계에서 경찰단계의 전환제도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방되는 경우와 지역공동체의 자원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훈방되는 경우는 인지한 소년비행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불간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의 자원으로 위임되는 경우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소년법원 대신에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에 비행청소년의 선도프로그램을 위임하는 경우이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126; 김용우, 1994:118). 이러한 경찰의 전환제도와 함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경찰의 재량권(discretion)이라 할 수 있다. 재량권이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하에서 경찰관의 양심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¹⁹⁾이라고 정의된다. 재량권은 경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사법의 재판과정에서도 존재하며 교정과정에서도 없지 않은 것이지만 경찰의 재량권은 모든 경찰의 행위 가운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재량권으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iegel and Senna, 200:489-90). 예를 들어 비슷한 행위의 절도를 범한 청소년들 간에도 한 청소년은 훈방될 수 있고, 다른 청소년은 체포되어 법정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 의해 재량권이 많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다.

경찰이 행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는 <표 4-1>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비행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느슨한 조치는 가두경고에서 시작하여 경찰서에서의 조정, 이송, 구류, 공식적 체포, 그리고 가장 엄격한 조치는 비행청소년을 소년법정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사실 경찰의 재량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량권을 너무 제한할 경우에는 실무에서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관들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경우에는 범법청소년을 울

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Litton and Marye, 1983).

19) Roscoe Pound, “Discretion, Dispensation, and Mitigation: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 Special Cas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vol. 35, 1960, p. 936.

바르게 처벌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관의 재량권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시기는 경찰과 청소년이 접촉할 초기이며 이 시기에 비행청소년들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²⁰⁾

<표 4-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택

순서	경찰관의 조치
1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	소년법정(juvenile court)
2	공식적 체포(formal arrest)
3	구류(detention)
4	이송(referral)
5	경찰서(에서)의 조정(station house adjustment)
6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조치)	가두경고(street warning)

자료 : Siegel and Senna(2000: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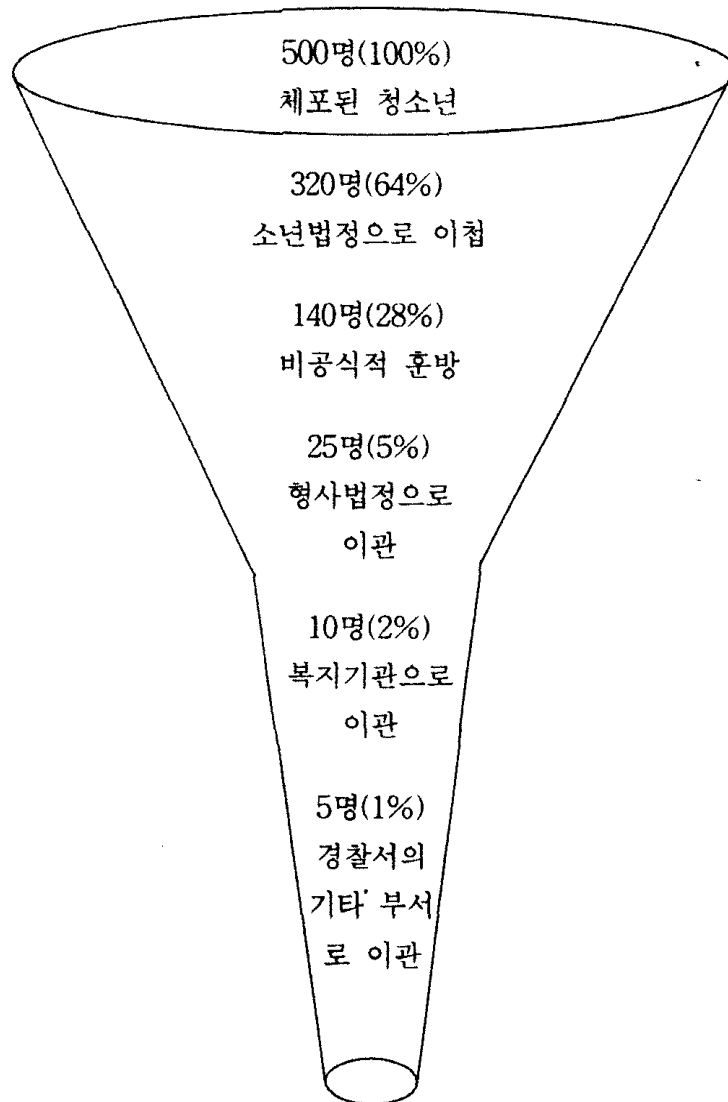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조치를 위해 법정으로 이관되는 청소년비행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FBI의 추산에 의하면 체포된 청소년비행자 가운데 약 2/3가량이 소년법정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림 4-3>는 갈때기의 그림을 통해 미국경찰이 어떻게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금된 500명당 60%이상이 소년법정으로 보내지고 약 33%가 훈방조치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포된 500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64%인 약 320명이 소년법정으로 이관되고 28%인 140명은 경찰서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어 훈방되며 5%인 25명 정도가 형사법

20) Richard J. Lundman, "Routine Police Arrest Practices" *Social Problems*, vol. 22, pp. 127-44, 1974.

21) FBI, *Crime in the U.S.: Uniform Crime Reports, 199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7. Siegel and Senna(2000:490) 재인용.

정으로 이관되며 2%인 10명은 복지기관에 위탁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에서 교육을 받고 1%인 5명은 기타 경찰서로 이송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비행청소년의 처리에 대한 미국 소년경찰의 재량



자료 : Jeffrey Butts, "Juvenile Court Processing of Delinquency Cases, 1985-1994", Fact Sheet 57(Washington, D.C.: OJJDP, 1998); Mellissa Sickmund et al., *Juvenile Court Statistics 1995*(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8) Mekissa Sickmund, Howard Snyder, and Eileen Poe-Yamagata,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1997*(Washington, D.C.: OJJDP, 1997), Siegel and Senna(2000:476, 491) 재인용; %저자첨가.

3) 미국소년경찰의 직무내용

미국의 소년경찰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며, 청소년범죄자를 인지하고 검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직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무단결석단속을 위하여 청소년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출석법(學校出席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거나, 아동들의 생명과 복지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법을 집행하거나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위기를 중재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표 4-2>에 나타나 있다.

4) 미국 경찰의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미국경찰은 범시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기타 사회봉사 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들 기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주체가 바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매일 사회봉사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지역사회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비행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청소년봉사국, 학교, 레크리에이션센터, 복지기관 및 취업프로그램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찰이 이러한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① 경찰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②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있는 어떤 나이의 어린이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부모를 참여시키거나 관련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어 효과적이다.

<표 4-2>

미국 소년경찰의 기능별 직무내용

기능	목적	업무내용
소년범죄 예방	· 소년들의 범죄활동 가담억제	· 소년들의 그룹과 개별적으로 접촉·관찰, 법의 필요성과 범법행위의 결과, 처벌 등에 대해서 소년들에게 조언 ·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장려·
소년 범죄자의 인지검거 (認知檢舉)	· 소년범의 적발 및 검거 ·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년범을 처우증진으로 교정감화조치	· 소년들이 범죄활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목격진술청취 · 소년범죄와 관련되는 증거자료 수집 · 범법혐의가 있는 청소년을 인지·검거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법원이나 관련당국에 인계
무단결석 단속	·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출석법을 준수하도록 촉구	· 학교당국으로부터 무단결석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학생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 무단결석학생들을 현장에서 단속, 부모에게 연락 상담 실시 ·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자는 소년법원이나 관계당국에 인계
아동보호법 집행	· 아동들의 생명과 복지보호	· 아동학대, 무관심, 학사(냉대) 또는 착취에 관한 고소, 고발, 신고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조치 · 위법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학대하는 성인들에 맞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를 다루어 아동복지사업단체(관계당국) 후원 · 필요시는 학대하는 성인들 체포
가정위기 중재	·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 ·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제거	· 당면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가정문제에 개입하여 위해요인 제거 · 시민들이 가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건설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권고 · 필요한 경우에는 호전적인 가족의 일원에 대해 강제력행사 또는 체포

자료 : 金成聞,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한국소년경찰의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강원대 : 석사논문, 1992), p. 19.

- ④ 프로그램들의 일부는 청소년비행을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찰이 관련된 청소년비행방지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Siegel and Senna, 2000;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 치안연구소, 1997; 김성문, 1992).

ㄱ) 도보순찰(Foot Patrol)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순찰하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순찰차를 타기보다는 도보로 순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순찰차로만 순찰할 경우 경찰이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거나 서로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도보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과 주민이 서로 신뢰하고 친밀하게 될 수 있어 주민들 속의 경찰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²²⁾

ㄴ) 청소년순찰 프로그램(TOP Program)

청소년순찰 프로그램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경찰이 행하는 순찰(Teens on Patrol)을 해 보도록 함으로써 경찰관들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청소년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의 비행방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수 백명의 청소년들을 참가시키고 있으며(Lipson, 1982),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많은 청소년들이 후일 경찰직을 택하고 있다.

ㄷ) 마약남용억제 프로그램(Project DARE)

마약남용억제 프로그램은 "Project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을 나타

22) 최근 미시간주립대의 미국립이웃도보순찰센터(National Neighborhood Foot Patrol Center at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연구결과에 의해 도보순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Trajanowicz and Harden, 1985).

내는 것으로 지역의 경찰이 십대들의 마약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료들의 압력에 못 이겨 마약이나 술, 담배 등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학교에서 개설된 강좌로서 이것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실제로 경찰복을 착용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마약퇴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담배, 알콜 및 마약의 실체가 어떤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동료학생들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기르도록 한다. DARE Program은 미국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경찰에 의해 채택되었고, 전국적으로 52%의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다(Siegel and Senna, 2000:499-500).

ㄹ) 청소년선도 프로그램(JUMP: Juvenile Mentoring Programs)

이것은 청소년 정의 및 비행방지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이 시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선도(mentoring)란 해당 청소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성인을 1:1로 연결시켜줌으로서 존경 및 상호믿음에 기반을 둔 감정적 유대를 맺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고, 또한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선도자를 보여줌으로서 비행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이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Big Brothers/Big Sisters of America"이다 (Siegel and Senna, 2000:500).

ㄷ) 경찰-학교 연계프로그램(Police-School Liaison Program)

이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선도를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경찰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찰이 지역사회, 학교,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의 대응방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면 ① 경찰과 청소년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② 경찰과 학교간의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며 ④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치안연구소, 1997:50).

나) 맥그러프 모빌(McGruff Mobile)

맥그러프 모빌은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환경을 감소시키고 반면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Take A Bite Out of Crime'(범죄분쇄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만약 시청자가 처할 수 있는 가상의 범죄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맥그러프(McGruff)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인 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143-4).

산타바바라의 경찰서에서는 트레일러를 개조하여 이 마스코트와 각종 시청각교재를 싣고 순찰차 'Barney'에 예인시켜 학교 등에 제공하면서 교통사고, 마약과 알코올의 문제, 담배와 건강문제, 폭력 등의 문제와 도덕성 제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김성문, 1992:21-2).

사) 이웃폭력상담 프로그램(Neighborhood Violence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외상후-스트레스징후(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앓고 있다는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다. 즉 만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이를 목격한 청소년들은 자주 희망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마약사용, 비행 및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폭력을 목격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해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Siegel and Senna, 2000:500).

오) 경찰-성직자 연대 프로그램(Police-Clergy Program)

성직자의 공신력과 시민에 대한 친화력을 이용함으로써 경찰과 성직자가 연대하여 청

소년비행을 방지하려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순찰활동에 성직자가 참여하여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치안연구소, 1997:50).

ㄱ) 통행금지(Curfew)

통행금지는 최근 청소년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등장하였다. 금세기 초를 시작으로 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온 통행금지는 경찰이 개입하여 엄격히 청소년비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1995년 미국내 인구 30,000명 이상의 도시 약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의 도시에서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iegel and Senna, 2000:501).

보통 통행금지법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을 물도록 한다.

2. 일본의 소년경찰

1) 일본소년경찰의 조직

일본에서는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조직으로는 경찰청을 비롯하여 총무청, 법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조직을 들 수 있고, 청소년 비행처우(非行處遇)를 위한 조직으로는 경찰, 검찰, 가정재판소, 소년감별소, 아동상담소, 소년원, 소년형무소, 지방更生보호위원회 및 보호관찰소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그림 4-4>)에 따르면 비행처우를 위한 조직으로서 경찰은 범죄소년, 우범소년 및 촉범소년을 발견 또는 검거한 후 검찰, 가정재판소, 아동상담소 등에 통고 또는 송치를 한다. 그 다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비행청소년을 수사한 후 아동상담소 또는 가정재판소에 처우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후 송치하며 또한

가정재판소에서 역송(逆送)되어 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다.²³⁾ 한편 가정재판소에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에 대해서 조사와 심판을 통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검찰에 역송하기도 한다. 소년감별소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수용하거나 감별하며, 소년원에서는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갱생보호기관으로서 보호관찰소가 일본 전국적으로 50개 정도가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중앙의 국가경찰과 지방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의 상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 국가경찰과 도도부현경찰에서의 소년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경찰

일본의 중앙경찰기구로는 경찰청이 있는데 경찰청은 1994년 내부 내국을 장관관방(長官官房),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및 정보통신국 등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23)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행위나 촉법행위를 하거나 우범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최선화 외, 2000:220-21).

먼저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범죄소년(犯罪少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연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다. 일본에서의 범죄소년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행한 후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다(치안연구소, 1997:37).

다음으로 촉법소년(觸法少年)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연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은 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상담소에 통고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적당한 조언을 행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치안연구소, 1997:37).

마지막으로 우범소년(虞犯少年)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최선화 외, 2000:220-21). 일본의 경우 우범소년은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는 사안의 내용, 가정환경 등을 판단하여 가정재판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송치 또는 통고하며 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하고 있다(치안연구소, 1997:37).

(<그림 4-5> 일본 소년경찰의 위치도(경찰청) 참조). 비행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생활안전국으로서, 여기에는 소년과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기획과, 지역과, 생활환경과, 총기대책과 및 약물대책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년과가 생활안전국에 소속된 것은 비행청소년대책을 포함하여 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총기나 약물 대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65).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소속된 소년과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치안연구소, 1997:33; 김승구, 1994:53;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126).

- ①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일
- ② 소년보도위원회에 관한 일
- ③ 소년보도(少年補導)²⁴⁾에 관한 일
- ④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에 관한 일
- ⑤ 미성년자 깃연금지법 및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의 규정에 의한 깃연 및 음주단속에 관한 일

또한 경찰청의 부속기관인 과학경찰연구소의 방범소년부(防犯少年部)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방범소년부의 보도연구실(補導研究室)과 환경연구실(環境研究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치안연구소, 199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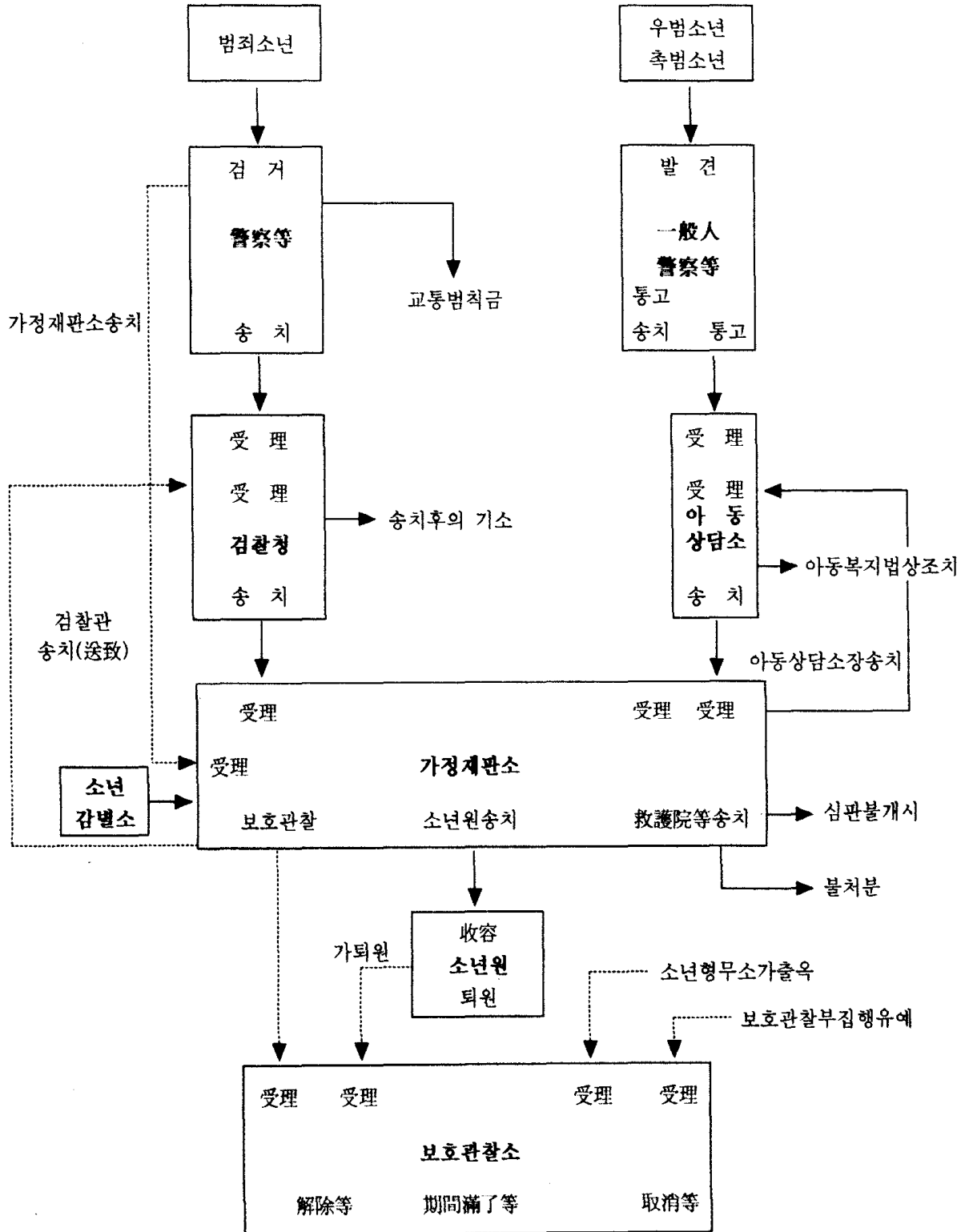
가) 보도연구실

- ① 비행소년의 성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② 소년비행성의 징표 및 비행위험성의 판정방법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③ 비행소년에 대한 면접 및 기타 보도기술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④ 보도에 종사하는 직원의 적성 및 교육훈련의 방법에 관한 연구

24) 소년보도(少年補導)는 우리말의 소년선도(少年善導)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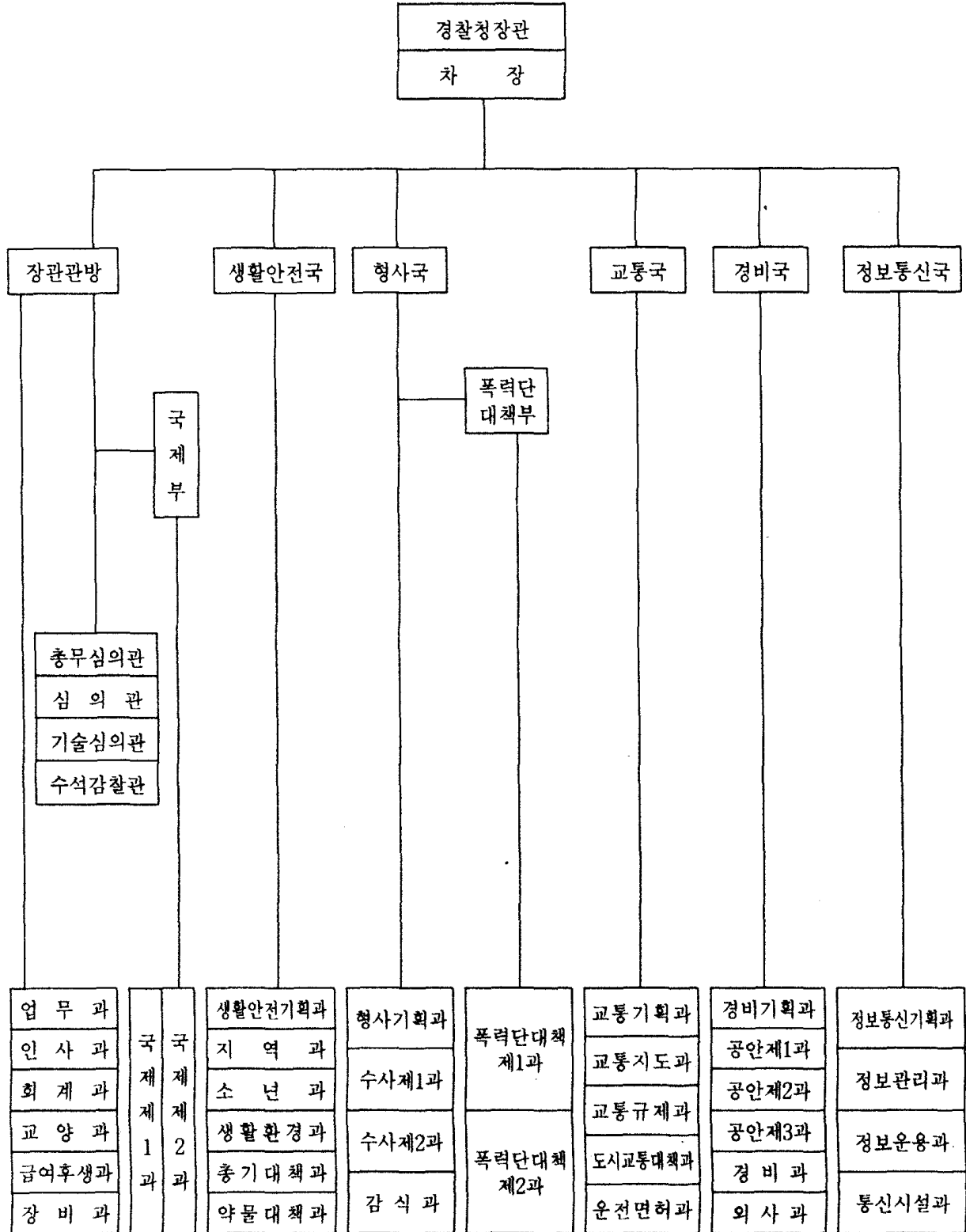
<그림 4-4>

일본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자료 : 『犯罪白書』(平成4年版), p. 204, 森下忠, 『刑事政策大綱』(東京:成文堂, 1993), p. 355
재인용.

<그림 4-5> 일본 소년경찰의 위치도(경찰청)



자료 :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편), 『警察防犯論』(제1편)(경찰대학, 1998), p. 66.

나) 환경연구실

- ①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②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지역활동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③ 성범죄, 알콜중독 기타 특수한 범죄의 방지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 ④ 성범죄, 알콜중독 이외의 범죄의 방지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ㄴ) 도도부현 경찰

흔히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지방경찰기구로는 동경도 경시청(東京都 警視廳)과 도부현(都府縣) 경찰본부가 있다. 경시청의 부서 중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지역부와 생활안전부가 있다(<그림 4-6> 참조).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는 생활안전총무과, 생활경제과, 보안과, 약물대책과, 생활안전특별수사대 및 총기대책과 등과 함께 생활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다. 각 도부현(都府縣) 경찰본부도 경시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방범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부와 생활안전부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에는 지역과와 생활안전과가 방범경찰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서의 하부 조직으로는 꼬우반(交番)과 주재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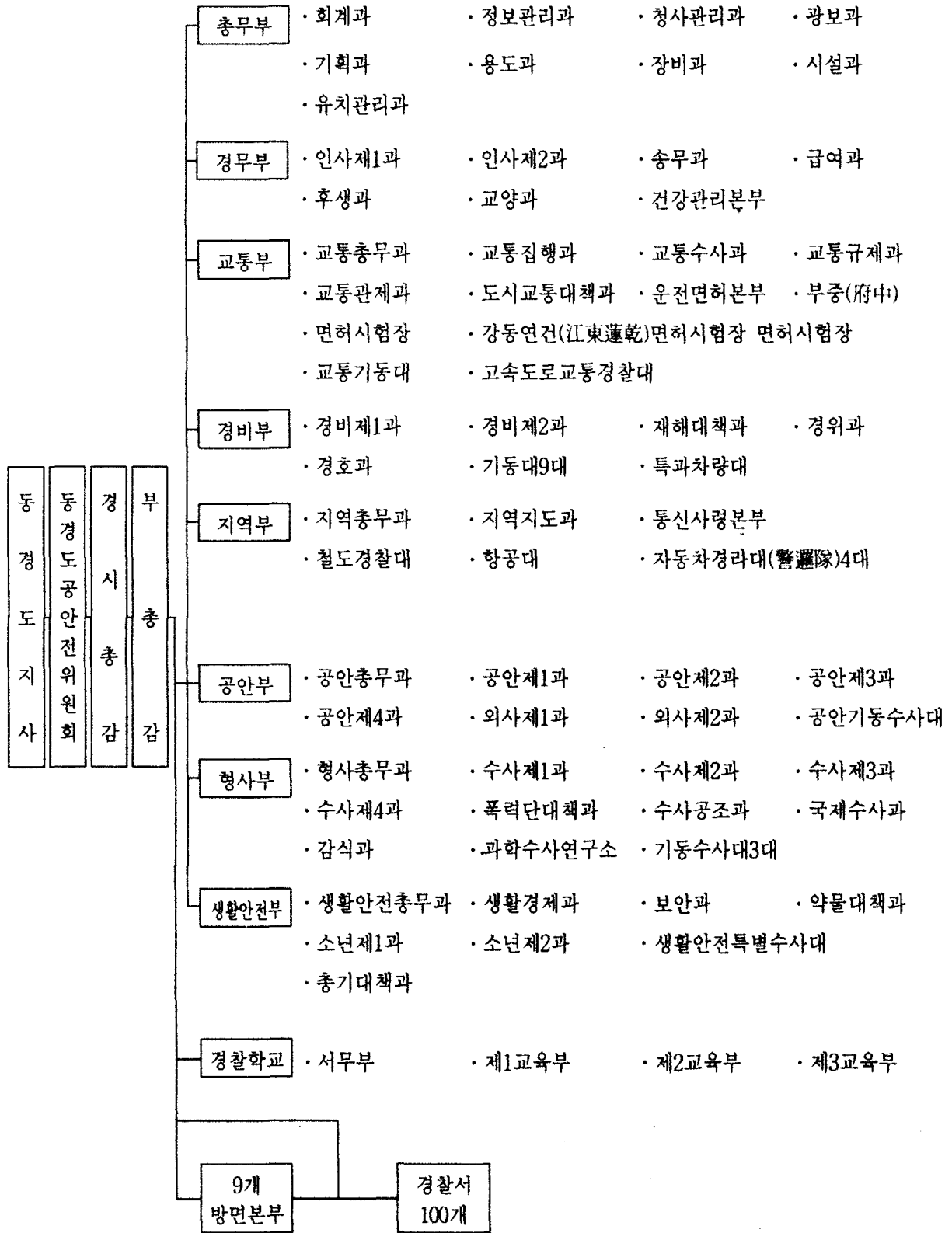
청소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년경찰의 업무는 생활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년제1과와 제2과에서 처리되고 있다. 소년제1과는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을 선도·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제2과에서 주로 범죄소년, 촉범소년, 성인복지범 및 시설도주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²⁵⁾

가) 소년 제1과

- ① 소년경찰의 조사·기획·지도
- ② 우범소년·불량행위소년의 보도·상담·자질감별
- ③ 가출인·미아의 수색·수배·보호
- ④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년경찰

25) 『日本警察法』, 『地域警察運營規則』, 김승구(1994:54)와 치안연구소(1997:34) 재인용.

<그림 4-6> 일본 소년경찰의 위치도(東京都 警視庁)



자료 :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편), 『警察防犯論(제1편)』(경찰대학, 1998), p. 68.

나) 소년 제2과

- ① 범죄소년·촉법소년의 보도
- ②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범죄의 수사
- ③ 시설도주소년의 수배·보호

이외에 동경경시청 소년제1과의 외곽기관으로 소년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① 소년의 보도, 상담, 자질감별 ② 지역소년문제의 조사연구 ③ 지역별 소년경찰 홍보 ④ 소년상담실과 가출소년의 보호를 위한 소년보호소의 운영 등이다(<표 4-3> 일본의 소년경찰관련조직 참조). 이외에도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조직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위원, 소년경찰협조원, 부인보도원 등이 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경찰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외곽조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4>과 같다.

2) 일본소년경찰의 활동

청소년의 비행처우를 위한 조직으로서 경찰의 역할은 중요한데,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의 취급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²⁶⁾ 이를 위해 경찰내부에서는 비행소년을 취급하는 경찰관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소년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로 충당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비행청소년을 취급하는 부서를 '소년계(少年係)'라고 부

26)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일본 경찰청이 제정한 「소년경찰활동요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이 요강의 제7조에는 「소년경찰활동의 목적이 소년의 비행방지와 소년의 복지를 도모함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임할 것」, 「소년의 심리, 생리 기타 특성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임할 것」, 「사실규명에 힘쓰는 것은 물론 소년의 성행 및 환경을 깊이 통찰하고 비행의 원인규명에 노력하여 그 비행방지 또는 복지상 적절한 처우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 「인격의 향상과 식견의 함양에 노력하여 소년 기타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경찰의 책무를 알고 항상 간부가 지시하는 방침에 따름은 물론 될 수 있는 한 학교의 교원, 아동위원, 보호자 기타 관계자와 협력할 것」, 「비밀유지에 유의하여 소년 기타 관계자가 비밀의 누설에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등으로 되어 있다(김승구(1994:72) 재인용).

르는데 사복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로서의 소년경찰은 그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菊地和典, 1994:42; 김승구, 1994:51-2).

<표 4-3> 일본의 소년경찰 관련조직

기관명	1) 경찰청(생활안전국소년과) 2)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 3) 경찰서	소년 보도센터
설치주체	도도부현 경찰(공안위원회가 관리)	1) 도도부현 2) 시정촌 3) 시정촌의 조합협의회 4) 관계기관·단체의 협의회 5) 민 간
기관의 업무	1) 비행소년의 보도 2) 복지범의 단속 3) 소년상담 4) 기타	1) 가두보도 2) 환경정화활동 3) 소년상담
상담업무의 개요	1) 비행, 불량행위 2) 기타 소년의 건진육성에 관한 상담의 수리	청소년문제에 관한 상담
상담자	1) 소년상담전문직원 2) 소년담당경찰관 3) 부인보도원	소년상담 담당자
상담형태	면접, 전화 등	전화, 면접, 상담
설치상황	1312개소 1) 도도부현 경찰본부(51) 2) 경찰서(1261)	695개소 1) 도도부현(20) 2) 시정촌(596) 3) 시정촌의 조합협의회(76) 4) 관계기관, 단체의 협의회 (2) 5) 민간(1)

자료 : 치안연구소,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대책』(치안연구소, 1997), p. 35.

<표 4-4> 소년경찰 외곽조직의 역할

경찰지원조직	역 할
소년지도위원 (少年指導委員)	· 약 5,000명 정도가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소속하에 청소년의 보호, 보도 활동 및 풍속영업 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함
소년보도위원 (少年輔導委員)	· 약 74,000명이 일본 전역의 695개소의 소년보도센터에 근무하면서 가두보도, 계속보도, 소년상담이나 보도소년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연락 및 전문기관과의 통고, 환경정화활동, 홍보활동 등을 함
소년보도원 (少年輔導員)	· 약 55,000명이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활동하는데, 주로 보호자, 사친회(PTA)회원, 민생위원, 청소년육성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소년의 보호 및 소년상담, 가두보도, 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의 계몽 등 소년의 비행방지 와 건전육성을 위한 활동을 함
부인보도원 (婦人輔導員)	· 부인보도원제도는 비권력적 활동의 분야로서 여성의 섬세하고 모성애적 특성을 살려 소년의 심성에 적정한 처우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부현 경찰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채용하였다(동경경시청에서는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도부현경찰은 부인보도원들에게 ①가두보도 ② 상담보도 ③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처리 ④ 계속보도 및 사후보도, 유해환경정화활동 ⑤ 관계기관과의 연락활동 등의 업무를 부여.
소년경찰 협조원(協助員)	· 약 1,100명이 도도부현 경찰 소속하에서 비행집단에 소속한 청소년에 대해 그 집단에서 이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상담 등의 활동을 함

자료 : 치안연구소(1997:35-6)를 여기서 표로 재구성함.

- ① 소년보도(少年輔導)활동 : 범죄소년의 수사검거활동, 비행소년 등의 보도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보호
- ②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에 의한 복지범(福祉犯) 수사,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성인범죄의 단속, 유해환경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화활동
- ③ 관계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 소년의 사회참가, 타기관과의 연계활동, 비행방지활동

ㄱ) 소년보도활동(少年補導活動)

소년보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선도 및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비행청소년의 발견에서 시작하여, 관계기관에의 송치 또는 통고, 소년에 대한 주의 및 조언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다시 말해서 소년경찰의 목적은 청소년비행의 방지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비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소년보도활동은 가두보도, 계속보도, 사후보도, 상담보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표 4-5>와 같다.

여기서는 소년보도활동중 가장 중요한 가두보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두보도(街頭補導: guidance on the street)'이란 경찰관이 직접 거리에 나가 적극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청소년 및 요보호청소년의 발견에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菊地和典, 1994:18). 실제로 가두보도의 시기와 장소를 보면 가두보도에는 일제가두보도(一齊街頭補導)와 통상가두보도(通常街頭補導)의 방법이 있는데 일제가두보도는 1월, 학년말, 여름방학, 행락계절이나 연말연시 등 주로 청소년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선택해서 이루어진다.

가두보도의 장소로서는 특히 청소년범죄가 빈발하는 번화가, 공원, 유원지, 커피숍, 게임센터, 백화점, 경마장, 여관, 모텔 등이 지적된다(菊地和典, 1994:47-48).

이러한 가두보도의 근거로서 '범죄의 예방'(警察法2條)이 일차로 거론되는데, 청소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분야를 불문하고 소년계경찰관이 온갖 문제의 상담에 응하고, 조언이나 지도를 하기도 하며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이 그 본분이기 때문이다.²⁷⁾

또한 청소년의 보호자나 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보호자와 직접 면접을 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²⁸⁾을 통하여 해결을 시도한다.

27) 이러한 상담의 비용은 무료이며 보통 각급 경찰서의 소년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도, 임시로 출장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菊地和典, 1994).

28) 경찰관이 소년이나 소년의 보호자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경찰활동요강」제9조에 의하면 면접·조사시의 유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과 함께 온 보호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 아래 조사할 것」, 「면접중의 대화의 기록에 있어서는 공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외에는 간단히 요

<표 4-5> 일본소년경찰의 가두보도활동

소년보도 활동		개 요
가두보도	개념	·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지도에 위해 경찰관이 직접 가두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불량소년 및 요보호소년 등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
	처리	· 비행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정, 학교 등과 연락하여 비행의 원인, 소년의 성격, 교우관계, 보호자 등의 감호능력 등을 검토 · 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송치·통고를 함
계속보도	개념	· 비행소년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문제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의 의뢰에 의하여 또는 장래 비행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속 행하는 보도를 말함
	처리	· 불량행위소년에 대해 본인, 보호자에 대한 주의 및 조언을 하거나 본인 및 보호자의 방문을 받아 상담을 행함
사후보도	개념	· 가정에서 송치, 통고된 소년에 대하여 송치, 통고를 받은 기관이 구체적인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때까지, 소년경찰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를 계속하는 것
	처리	· 재비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가정에 송치, 통고한 경우 범죄 예방 및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방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연락을 취함
상담보도	개념	·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 소년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심리학 등을 이수한 전문직 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소년계의 경찰관, 부인보도원을 배치하여 소년과 보호자 등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행함
	처리	·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담전용전화를 개설하거나 공민관 등에 출장하여 상담업무를 행함

* 이 표는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1998:127-8), 치안연구소(1997:38-42), 김승구(1994:65-84) 및 菊地利典(1994:40-53)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임.

점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경찰수첩에의 기입을 피하는 등 소년 또는 그 보호자에게 불안이나 경계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면접중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말을 잘 듣고 거짓진술, 반항 등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억누르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할 것」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김승구(1994:72-73)에서 재인용).

‘가두보도’를 통해서 보도(補導)한 사건에서 청소년을 일시 경찰서 내에 유치하는 ‘일시보호조치(temporary protection measure)’를 취하는 일은 드물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성년자는 대다수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로서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범죄의 수사기관인 경찰에 장기간 유치시키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① 가출 중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당한 보호자와 숙박장소가 없는 경우
- ② 보호자가 청소년을 학대하고 방임하고 있는 경우
- ③ 청소년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어 비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소장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거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여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兒童福祉法33條1項).³⁰⁾

가두보도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을 목격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로서 가정재판소나 아동상담소와 같은 관련기관이 관여할 여지는 적고, 주로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종결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주로 다음의 3가지가 있다(菊地和典, 1994:18)

- ① 현장에서의 조치 : 비행청소년의 행위가 단순하고 불량성이 지극히 적은 경우에는 보도현장에서의 주의와 조언으로 끝낸다.

29) 예를 들어 일본 소년법은 신병구속을 하는 경우에도 ‘관호조치(觀護措置)’에 의한 소년감별소에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少年法 第17條 ①②③④⑤ ‘觀護の措置’ 참조). 이 관호조치에는 가정재판소의 관호에 부치는 경우와 소년감별소에 송치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으나 실제로 전자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호조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소년감별소에의 송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三下忠, 1993:356).

30) 菊地和典, 『日英對譯 少年保護事件の手引(主要法令・用語付)』(東京: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4), pp. 51-52.

- ② 연락조치 :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가정연락」, 학교와 직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학교연락」, 「직장연락」 등이 있다.
- ③ 신병(身柄)의 인도 : 보호자에게 비행청소년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 비행의 방지에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비행청소년에게는 특히 필요하다.
 - ㉠ 가출청소년
 - ㉡ 자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
 - ㉢ 음주로 인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현재 약물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
 - ㉣ 무단외박, 심야배회, 불순한 이성교제 등을 하고 있는 고교생 이하의 소년
 - ㉤ 많은 액수의 금품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ㄴ)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일본경찰은 유해업소와 관련하여 지역을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 중점지구」와 「소년을 비행으로부터 지키는 시범지구」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전국의 286개소의 가라오케와 유해자동판매기 등이 밀집해 있는 유해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지킬 필요성이 높은 우범지역, 출입제한지역 등 419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치안연구소, 1997:43-4).

ㄷ)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은 지역, 학교, 직장 등의 조직과 경찰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먼저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경찰은 학교·경찰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청소년의 직장과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경찰협의회를 통해 근로청소년의 비행실태와 방지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또한 도도부현 등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들

러싼 유해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판매규제, 자동판매기의 규제, 청소년의 출입제한 등과 청소년 자신에 대한 유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심야외출규제, 문신규제 및 음행규제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치안연구소, 1997:44-45).

특히 도도부현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 '소년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소년상담에 나서고 있다. 소년상담창구에는 심리학 등을 이수한 전문직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소년계경찰관, 부인보도원을 배치하여 청소년들과 보호자를 상대로 지도나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년상담은 시민의 요청을 전제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는 특수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의 비용은 무료이며 보통 각 경찰서의 소년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로 출장상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菊地和典, 1994:42-43).

3) 일본소년경찰의 최근동향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소년경찰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³¹⁾:

- ① 청소년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 ② 중대한 비행에 대한 대응
- ③ 소년의 규범의식의 회박화와 가정·지역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대응
- ④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의 대응

3. 한국의 소년경찰 : 미국 및 일본 소년경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미국과 일본의 소년경찰과의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소년경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渡辺康弘. 1998. 「少年非行の今日的意味と少年警察」 『警察學論集』第51卷 第6號, pp. 26-47.

1) 소년경찰조직

먼저 경찰청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방범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방범국에 방범기획과와 방범지도과가 있고, 소년계는 지도계 및 총포계와 함께 방범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다(<그림 4-7> 참조). 경찰청에서의 이러한 소년계의 조직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즉 지방경찰청에서의 소년계는 방범기획계와 방범지도계 등과 함께 방범과장의 관할하에 있고, 이는 일선 경찰서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소년계가 없는 일선 경찰서는 방범지도계의 소년담당 경찰관이 소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70-71).

이러한 한국의 소년경찰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소년경찰의 임무가 좀 더 포괄적이나, 미국의 경우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의 경우 운영과(Operation Bureau)에 소속되어 있는 소년계내에서도 운용반, 관리반, 비행방지반 등으로 세분되어, 운용반에서는 유해환경이나 소년범죄자의 체포, 처리, 방지 및 소년비행의 정보입수를 담당하고, 비행방지반은 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을, 그리고 관리반은 소년비행실태를 분석하고 소년재판의 결과를 관리분류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는 콜로라도의 덴버 시경찰국도 마찬가지로 덴버 시경찰국의 소년부내에서 비행방지과, 수사과, 자동차절도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125).

(한국)경찰조직내에서 소년계의 소년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72,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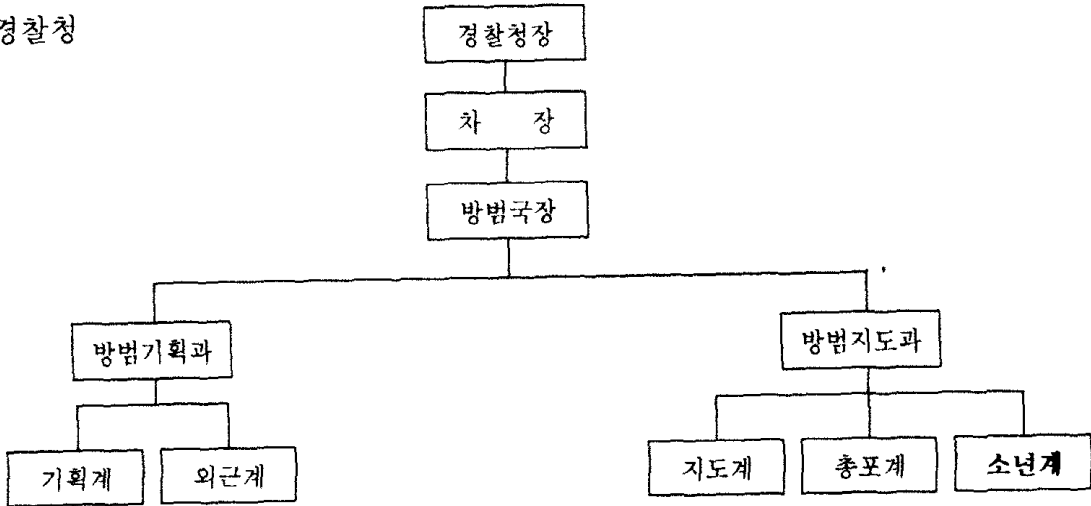
- ① 청소년 선도, 비행방지에 관한 임무
- ② 소년범죄의 수사 및 비행소년의 보호
- ③ 미아·가출인 보호 및 수배
- ④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⑤ 소년범죄자료 수집분석

이러한 소년경찰의 임무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7>

한국 소년경찰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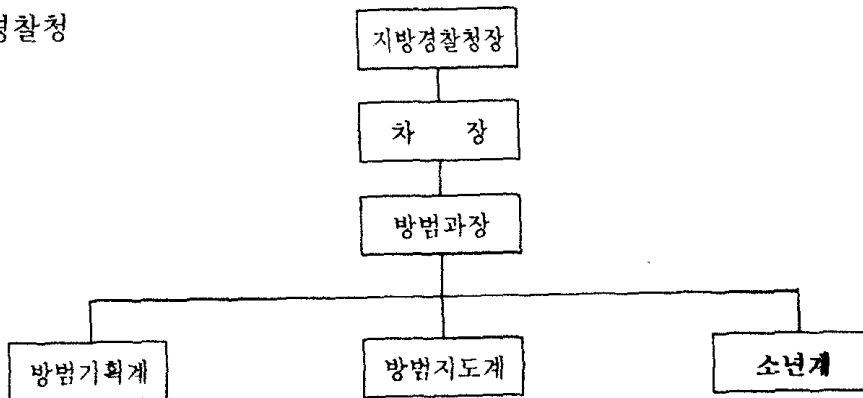
A.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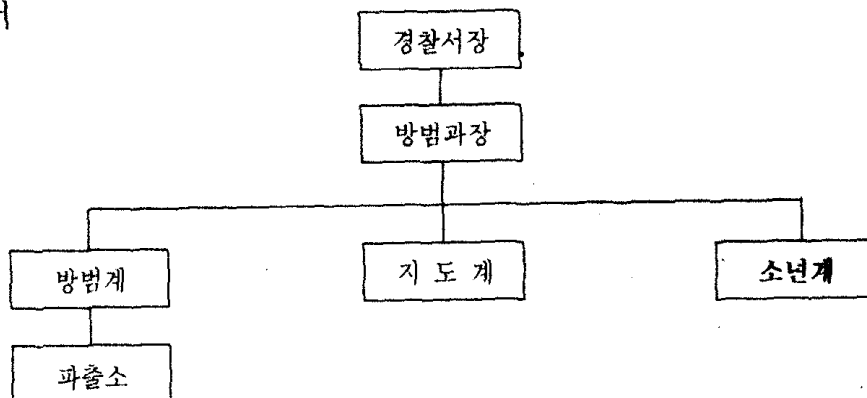
*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의 조직과 유사(방법국장 대신에 방법부장)

*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1.2.3부장 중 2부장 산하

B. 지방경찰청



C. 경찰서



자료 : 경찰대학 교재편찬위원회(편), 『警察防犯論』(제1편)(경찰대학, 1998), pp. 70-71.

다만 미국경찰의 임무와 비교해 보면 미국소년경찰의 임무가 한국의 경우보다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단결석을 단속한다든가 가정위기를 중재하는 등까지도 소년경찰의 직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표 4-2> 미국소년경찰의 기능별 직무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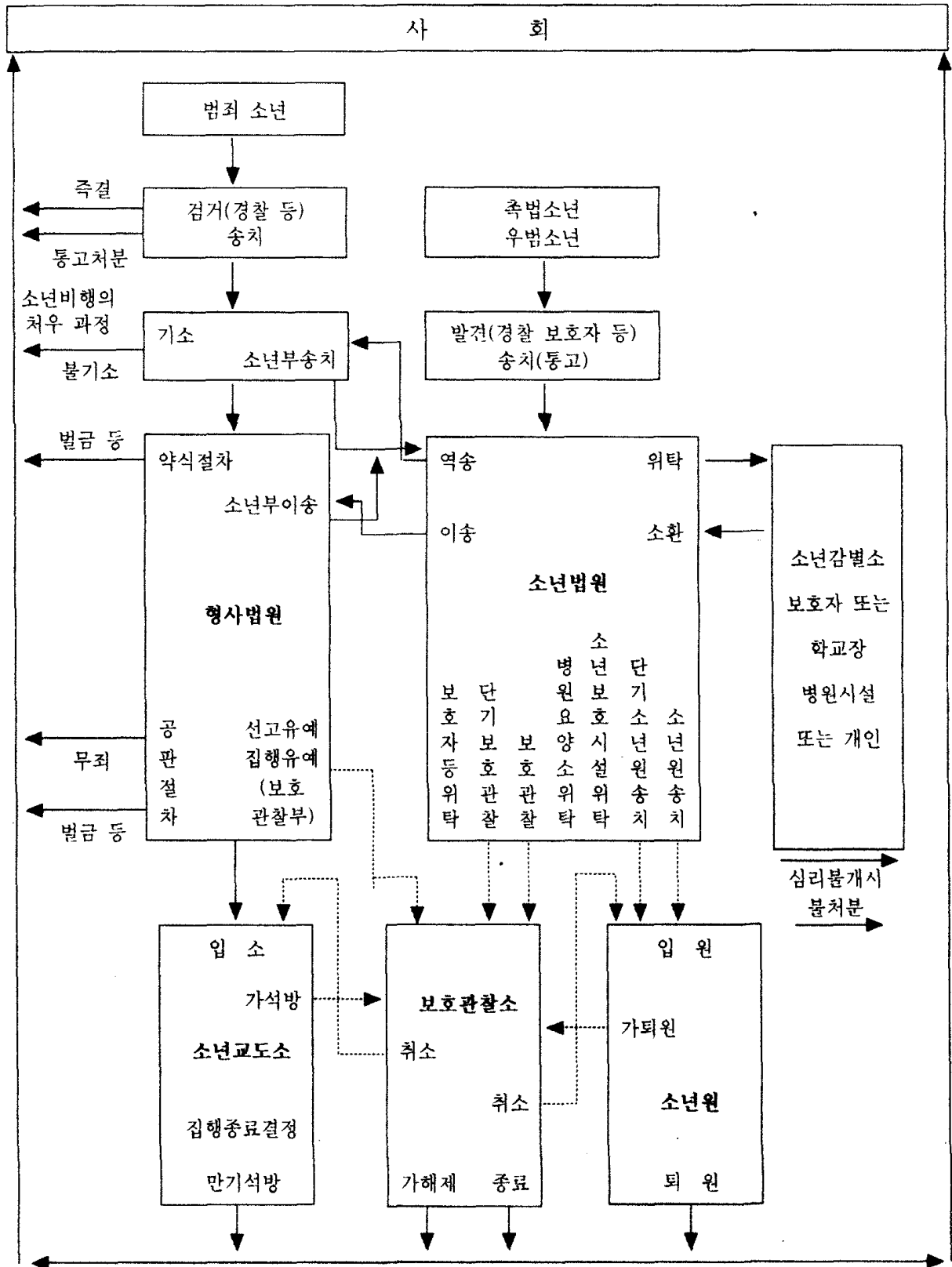
2) 비행청소년의 사법체계

비행청소년의 사법체계를 주로 경찰단계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한국의 사법체계(<그림 4-8>)는 일본의 사법체계(<그림 4-4>)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소년을 우범소년 및 촉법소년과는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검찰청이나 아동상담소에서 송치되어 오는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정재판소의 역할이 돋보인다는 점이 한국의 경우와는 특이하다.

미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그림 4-2>)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미국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비행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재량권(discretion)이 많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경찰의 소년범죄 처리제도상 소년범죄자에 대한 신병구속이 과다하다는 점(김승구, 1994:219)과 상당히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년경찰의 재량권이 충분히 주어짐으로 해서 상당수의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에게로 훈방되거나 지역공동체의 자원으로 이관되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비행방지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낙인을 가지고 성인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소년경찰의 재량권이 가지는 함의는 비행청소년을 건전하게 선도하려는 한국의 소년경찰직무규칙의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³²⁾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 재량권의 부여에서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즉 소년경찰직무규칙 제1조 1항에는 "(소년경찰직무규칙은) 청소년을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소년경찰 활동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림 4-8> 한국의 비행청소년 사법체계



자료 : 鄭榮錫·中洋均, 『刑事政策』(서울:법문사, 1996), p. 427.

3) 경찰관련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한국경찰이 관련된 대표적인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는 범죄예방교실, 청소년명예경찰제, 사랑의 교실 및 청소년 고충상담실 등이 있다.

ㄱ) 범죄예방교실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는 범죄예방교실을 통해서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미국의 경찰-학교 연계프로그램 (Police-School Liaison Program)과 유사하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1997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0,333개교 3백여만명을 대상으로 하여(경찰청, 1998:94), 그리고 1998년에는 10,333개교 1백6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경찰청, 1999:93).³³⁾

ㄴ) 청소년 명예경찰제

이는 1998년 8월 1일부터 6개월간 서울 강서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14개 경찰서에 시범 운용된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911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청소년 명예경찰로 위촉하여 이들에게 위촉장, 모자, 배지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로 하여금 범죄대응능력 정신교육, 파출소경찰과의 합동근무, 112신고센터 순찰차출동 지령실습, 청소년 고충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케 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치안현안 및 청소년 문제에 관한 교육, 교통보조 및 미아보호 등의 활동에

33) 범죄예방교실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4-6>

범죄예방교실 운영실적

구 분	'93	'94	'95	'96	'97
실사회수	23,173	20,822	15,117	12,295	11,376

자료 : 경찰청(1998:95)

참여하게 하였다(경찰청, 1999:93). 청소년 명예경찰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순찰 프로그램(TOP Program: Teens on Patrol Program)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요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찰관의 역할을 취해봄으로써 청소년들 사이에 경찰관들을 잘 이해시켜 궁극적으로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ㄷ) 사랑의 교실

제주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에 설치하여 비행청소년이나 불량소년 또는 문제가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자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성인범죄화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1년 3,928명이 참가한 이래 1998년에는 참가인원이 총 9,024로 횡수로는 289회를 기록하였다.³⁴⁾

ㄹ) 청소년 고충상담실

청소년들과 직접 면접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단체에 설립하였다(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8:435). 199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만명 이상의 상담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고충상담실의 운영실적은 <표 4-8>과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미국에서의 경찰관련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볼 때,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경찰관련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4)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4-7>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실사회수(회)	83	90	91	94	101	115	125	289
참가인원(명)	3,928	4,483	4,337	5,865	7,610	6,288	6,689	9,024

자료 : 경찰청, 1999:94

<표 4-9> 한국의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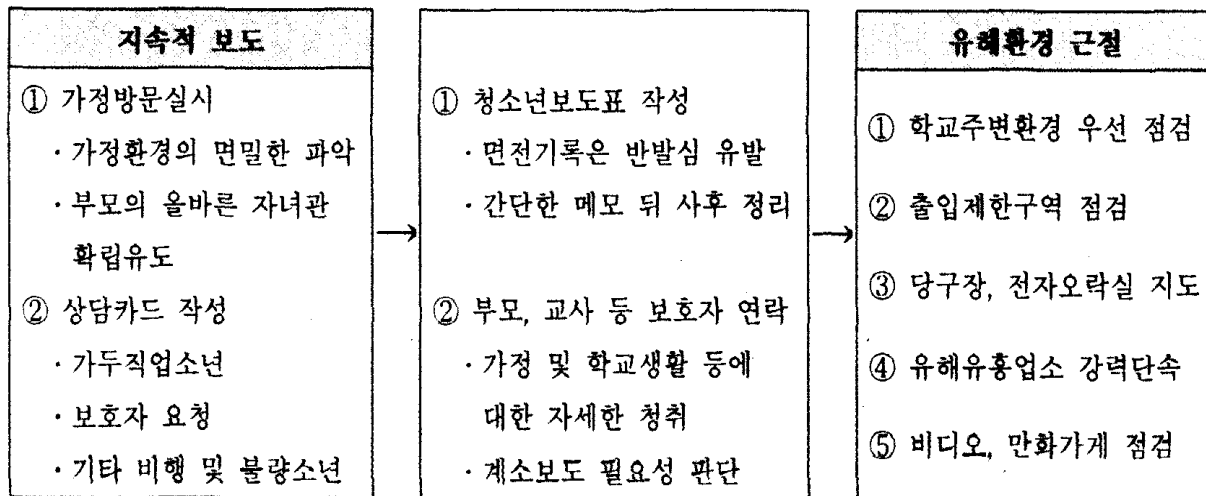
<표 4-9-1> 선 도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작정 상경, 무단 가출 ② 무단결석, 음주, 흡연 ③ 폭언, 싸움 등 난폭행위 ④ 부녀희롱 ⑤ 남녀혼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란, 폭력 비디오 및 출판물 소지·관람 등 ② 불건전 당구장, 오락실 출입 ③ 유해유흥업소, 우범지역출입 및 배회 ④ 유흥업소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드, 부탄가스 흡입 ② 흉기소지 ③ 불량집단조직 ④ 기타 비행 및 우범소년
--	---	---

<표 4-9-2> 유 의 사 항

- ① 성실한 마음가짐 - 청소년이 나의 아들, 딸과 동생이라는 생각에서 접근
- ② 신중한 면담시기 선택 - 일출전, 일몰 후는 피하고 수업 등에 방해가 안되는 시간 선택
- ③ 적절한 면담장소 선택 - 경찰관서는 피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실 등 독방 이용(보호자 입회)
- ④ 호의적인 태도 견지 - 우호적인 태도로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중점
- ⑤ 화기애애한 대화유도 -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소년이 관심있는 것을 대화소재로 선택
- ⑥ 보호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 부모, 교사, 사용자 등과 항상 긴밀한 관계 유지

<표 4-9-3> 선 도 요 령



자료 : 경찰교재편찬위원회(1998:439).

보도의 대상, 보도의 요령 및 보도시의 유의사항은 <표 4-9-1, 표 4-9-2, 표 4-9-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선도요령에 있어서는 먼저 청소년보호표를 작성하고 난 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지속적 보도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상담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V.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경찰의 개입에 관한 실태분석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조사는 2000년 7월 15일에서 7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설문지는 면접법(interview)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면접자(interviewer)로서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로서 총 설문지는 110매로 누락없이 모두 회수하였다. 물론 면접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³⁸⁾ 면접자들이 모두 사회학 전공자들로써 사회조사에 많은 경험을 가졌으므로 오히려 질문지법보다는 면접법이 유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질문지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제3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응답의 회수율을 거의 100%로 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자료수집의 운영면에서 융통성 내지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서 완벽하고 충실한 응답을 얻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 이용되었다. 물론 확률 표집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본 연구는 주로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므로 확률표집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률표집법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오히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확률표집을 할 경우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는 표본대상자가 응답자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경우 본 조사가 확률표집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주로 유해업소와 관련한 대부분의 설문문의 내용에 관한 응답이 때

38) 면접법의 단점으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김경동·이은숙, 1999:201-39):

- 1) 익명성의 확보가 곤란하다.
- 2)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곤란하다.
- 3) 면접자의 훈련과 기술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 4) 즉각적인 응답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우 피상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대구시내의 유해업소가 주로 산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이곳들을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피조사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에는 주로 개인적 배경,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의 유형을 알기 위한 항목, 그리고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묻는 항목 등이 있다.

먼저 개인적 배경에 관한 항목에는 나이, 성별, 교육정도, 부모의 생존여부와 교육정도, 가정의 소득, 부모의 직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청소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유해업소 출입의 빈도 및 출입시 경찰에 의한 제지의 경험유무, 유해업소 출입시 그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의 유형을 알기 위한 항목인데, 여기에는 경찰관 중 통제감독강조형, 갱생보호강조형, 적극형, 무관심형 등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12개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통제감독형의 경찰관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과 보호갱생형의 경찰관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을 이용하여³⁹⁾ 통제감독강조형, 갱생보호강조형, 적극형, 그리고 무

39)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통제감독형과 갱생보호형의 경찰관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통제감독형 경찰관 항목>

- ①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업소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유해업소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④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잘 감시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여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⑥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업소 출입청소년을 다루는 경찰관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묻는 항목이 6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에 대한 느낌을 응답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첨부된 설문지 참조). 경찰관의 유형과 경찰관에 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Likert의 5점 척도에 따라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저 그렇다’ 4-‘아니다’ 5-‘전혀 아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윈도우용 한글 SPSS’가 이용되었다. 주로 빈도 분석, 교차분석, 변량분석 및 t-test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경찰관의 유형을 통제감독과 갱생보호의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적극형, 갱생보호 강조형, 통제감독강조형 및 무관심형 등으로 나누어 이러한 경찰관의 유형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가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갱생보호형 경찰관 항목>

- ①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경찰관의 목표는 유해업소를 출입 하는 청소년을 잘 타일러서 이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⑤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경찰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 ⑥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로 볼 때 남자가 44.5%, 여자가 55.5%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조사대상자의 성별

변인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49(44.5)
	여자	61(55.5)
계		110(100%)

연령별로 볼 때 조사대상자의 51.8%가 18세였으며, 16세가 16.4%, 17세가 12.7% 그리고 19세가 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조사대상자의 연령

연령	13	2(1.8)
	14	1(0.9)
	15	7(6.4)
	16	18(16.4)
	17	14(12.7)
	18	57(51.8)
	19	8(7.3)
	20	1(0.9)
	21	1(0.9)
	22	1(0.9)
	계	110(100%)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재학중인 대상자가 78.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인 대상자도 13.6%나 되었고, 그 다음 중학교 재학생이 5.5%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2.7%의 순이었다(<표 5-3> 참조).

<표 5-3> 조사대상자의 학력

학 력	중학교재학중	6(5.5)
	고등학교재학중	86(78.2)
	고등학교중퇴	15(13.6)
	고등학교졸업	3(2.7)
계		110(100%)

결손가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으로 부모의 생존을 조사해 본 결과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가 96.4%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5-4> 참조).

<표 5-4> 조사대상자 부모의 생존

부의 생존	친아버지 계심	106(96.4)
	계부가 계심	-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음	-
	돌아가심	4(3.6)
	고 아	-
계		110(100%)
모의 생존	친어머니 계심	108(98.2)
	계모가 계심	-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음	1(0.9)
	돌아가심	1(0.9)
	고 아	-
계		110(100%)

<표 5-5> 부의 직업

부의 직업	구분	성별(괄호안은 %빈도)		
		응답자(남)	응답자(여)	계
전문직		2(1.9)	9(8.4)	11(10.3)
관리직		2(1.9)	8(7.5)	10(9.3)
사무직		8(7.5)	13(12.1)	21(19.6)
판매·서비스직		17(15.9)	11(10.3)	28(26.2)
생산직		17(15.9)	17(15.9)	34(31.8)
기 타		1(0.9)	2(1.9)	3(2.8)
합 계		47(43.9)	60(56.1)	107(100%)

<표 5-6> 모의 직업

모의 직업	구분	성별(괄호 안은 %빈도)		
		응답자(남)	응답자(여)	계
전문직		1(0.9)	3(2.8)	4(3.7)
관리직		-	2(1.9)	2(1.9)
사무직		-	2(1.9)	2(1.9)
판매·서비스직		14(13.0)	20(18.5)	34(31.5)
생산직		7(6.5)	4(3.7)	11(10.2)
기 타		26(24.1)	29(26.9)	55(50.9)
합 계		48(44.4)	60(55.6)	108(100%)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부의 직업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직종은 생산직(31.8%), 판매·서비스직(26.2%), 사무직(19.6%), 전문직(10.3%), 관리직(9.3%) 및 기타의 순이었고, 모의 직업에서는 기타 직종이 가장 많은 50.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은 판매·서비스직(31.5%), 생산직(10.2%)과 전문직(3.7%) 등의 순이었다(<표 5-5>와 <표 5-6> 참조).⁴⁰⁾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대졸이상(22.7%), 중졸(16.4%) 및 고등학교 중퇴(5.5%)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서는 고졸(43.1%), 중졸(31.2%), 초등학교졸(8.3%), 대졸이상(7.3%) 등의 순이었다(<표 5-7> 참조).

<표 5-7>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교육정도	무 학	1(0.1)
	초등학교 졸업	5(4.5)
	중학교 중퇴	5(4.5)
	중학교 졸업	18(16.4)
	고등학교 중퇴	6(5.5)
	고등학교 졸업	49(44.5)
	대학교 중퇴	1(0.1)
	대학교 졸업 이상	25(22.7)
계		110(100%)
어머니의 교육정도	무 학	1(0.9)
	초등학교 졸업	9(8.3)
	중학교 중퇴	4(3.7)
	중학교 졸업	34(31.2)
	고등학교 중퇴	5(4.6)
	고등학교 졸업	47(43.1)
	대학교 중퇴	1(0.9)
	대학교 졸업 이상	8(7.3)
계		109(100%)

40)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등 직업의 각 부류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직업에 관하여는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를 참조할 것.

응답자 가족의 월 평균소득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61.6%), 그 다음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이 19.6%, 300만원 이상이 11.2% 그리고 100만원 미만이 7.5%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5-8> 참조).

<표 5-8> 조사대상자 가족소득

소 득	50만원-100만원 미만	8(7.5)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33(30.8)
	150만원 이상-200만원미만	33(30.8)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21(19.6)
	300만원이상	12(11.2)
계		107(100%)

2)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응답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학교선생님, 친구관계, 자기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표 5-9>). 결과에 따르면 학교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및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선생님에 대한 불만족도는 39.1%로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만족도는 54.6%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다.

<표 5-9>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표 5-9-1>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19(17.3)
	만족하는 편	51(46.4)
	그저 그렇다	25(22.7)
	조금 불만족	12(10.9)
	대단히 불만족	3(2.7)
계		110(100%)

<표 5-9-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2(1.8)
	만족하는 편	41(37.3)
	그저 그렇다	46(41.8)
	조금 불만족	9(8.2)
	대단히 불만족	12(10.9)
계		110(100%)

<표 5-9-3> 학교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학교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4(3.6)
	만족하는 편	26(23.6)
	그저 그렇다	37(33.6)
	조금 불만족	23(20.9)
	대단히 불만족	20(18.2)
계		110(100%)

<표 5-9-4>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24(21.8)
	만족하는 편	67(60.9)
	그저 그렇다	17(15.5)
	조금 불만족	1(0.9)
	대단히 불만족	1(0.9)
계		110(100%)

<표 5-9-5>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1(0.9)
	만족하는 편	5(4.5)
	그저 그렇다	44(40.0)
	조금 불만족	42(38.2)
	대단히 불만족	18(16.4)
계		110(100%)

<표 5-9-6>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10(9.1)
	만족하는 편	46(41.8)
	그저 그렇다	32(29.1)
	조금 불만족	14(12.7)
	대단히 불만족	8(7.3)
계		110(100%)

3)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의 유해업소 출입실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소주방, 호프집 및 카페 출입실태에 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40.9%)은 전혀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25.5%는 6개월에 1~2회, 14.5%는 두 세달에 1~2회, 11.8%는 한 달에 1~2회 출입한다고 대답하였다(<표 5-10-1> 참조).

단란주점과 전화방에는 각각 거의 절대 다수인 84.5%와 97.2%가 전혀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응답자의 10%는 단란주점에 6개월 동안 1~2회 출입한다고 대답하였다.

노래연습장, PC 게임방, 비디오 감상실 및 전자오락실 등은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

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들이지만, 표에서 보다시피 노래연습장, PC게임방과 전자오락실 등은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광범위하게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디오 감상실만은 밤10시 이후 15%정도의 응답자들이 6개월에 1~2회정도 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5-10-4, 5-10-5, 5-10-6, 5-10-7> 참조).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숙박업소에는 응답자의 12% 정도가 6개월에 1~2회 정도 출입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0> 유해업소 출입실태

<표 5-10-1> 소주방, 호프집, 카페

소주방, 호프집, 카페	전혀 가본 적이 없다	45(40.9)
	6개월에 1~2회	28(25.5)
	두 세 달에 1~2회	16(14.5)
	한 달에 1~2회	13(11.8)
	일주일에 1~2회	6(5.5)
	매일 1~2회 이상	2(1.8)
계		110(100%)

<표 5-10-2> 단란주점

단란주점	전혀 가본 적이 없다	93(84.5)
	6개월에 1~2회	11(10.0)
	두 세 달에 1~2회	3(2.7)
	한 달에 1~2회	2(1.8)
	일주일에 1~2회	1(0.9)
계		110(100%)

<표 5-10-3>

전 화 방

전화방	전혀 가본 적이 없다	105(97.2)
	6개월에 1~2회	1(0.9)
	한 달에 1~2회	1(0.9)
	일주일에 1~2회	1(0.9)
	계	108(100%)

<표 5-10-4>

노 래 연 습 장

노래연습장 (밤10시 이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26(23.6)
	6개월에 1~2회	35(31.8)
	두 세 달에 1~2회	22(20.0)
	한 달에 1~2회	17(15.5)
	일주일에 1~2회	10(9.1)
계	110(100%)	

<표 5-10-5>

PC게임방

PC 게임방 (밤10시 이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26(23.9)
	6개월에 1~2회	23(21.1)
	두 세 달에 1~2회	11(10.1)
	한 달에 1~2회	22(20.2)
	일주일에 1~2회	20(18.3)
	매일 1~2회 이상	7(6.4)
계	109(100%)	

<표 5-10-6>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감상실 (밤10시 이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77(71.3)
	6개월에 1~2회	16(14.8)
	두 세 달에 1~2회	2(1.9)
	한 달에 1~2회	8(7.4)
	일주일에 1~2회	4(3.7)
	매일 1~2회 이상	1(0.9)
계		108(100%)

<표 5-10-7>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밤10시 이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27(25.0)
	6개월에 1~2회	14(13.0)
	두 세 달에 1~2회	12(11.1)
	한 달에 1~2회	23(21.3)
	일주일에 1~2회	23(21.3)
	매일 1~2회 이상	9(8.3)
계		108(100%)

<표 5-10-8>

숙박업소

숙박업소	전혀 가본 적이 없다	92(83.6)
	6개월에 1~2회	13(11.8)
	두 세 달에 1~2회	3(2.7)
	한 달에 1~2회	2(1.8)
계		110(100%)

<표 5-10-9> 윤락업소

윤락업소	전혀 가본 적이 없다	106(96.4)
	6개월에 1~2회	2(1.8)
	두 세 달에 1~2회	1(0.9)
	한 달에 1~2회	1(0.9)
계		110(100%)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 부터의 어떤 제재나 지도를 받은 경험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거의 90%가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표 5-11> 참조).

<표 5-11> 유해업소 출입경험

유해업소 출입시 제재나 지도 경험유무	있다	11(10.6)
	없다	93(89.4)
계		104(100%)
유해업소에서 일해본 경험 유무	있다	8(7.5)
	없다	99(92.5)
계		107(100%)

유해업소 출입시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56.7%의 응답자가 자기자신에 책임을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사회제도에 책임을 있음을 지적한 응답자도 27.9%나 되었다(<표 5-12> 참조).

유해업소 출입의 동기에 관해서는(<표 5-13>) 응답자의 32.1%가 '심심해서'라고 대답했으며, 14.3%가 '친구의 권유로', 그리고 13.1%가 '호기심때문'으로 대답함으로써 <표 5-12>에서 지적한 유해업소출입에 대한 책임소재가 상당부분 자기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와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은 13.1%나 됨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의 책임

소재가 사회제도에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표 5-12> 유해업소 출입의 책임소재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시 책임소재	자기자신	59(56.7)
	가 정	5(4.8)
	학 교	3(2.9)
	친구관계	5(4.8)
	사회제도	29(27.9)
	기 타	3(2.9)
계		104(100%)

<표 5-13> 유해업소 출입동기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시 주된 동기	공부가 지겨워서	10(11.9)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4(4.8)
	심심해서	27(32.1)
	친구가 가자고 해서	12(14.3)
	호기심에서	11(13.1)
	돈을 벌기 위해서	7(8.3)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어서	4(4.8)
	기타 이유로	9(10.7)
계		84(100%)

4) 유해업소출입과 관련된 경찰에 대한 태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경찰의 역할을 통제감독하는 측면과 갱생보호측면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자의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인지의 유형에 따라,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하여 경찰의 역할이 법을 집행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통제감독형'과 경찰의 역할을 주로 청소년들의 입장에 서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갱생보호형'으로 나누었다.⁴¹⁾

먼저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통제감독형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표 5-14>와 같다. 통제감독형의 경찰역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약 17.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은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 11.8%가 '전혀 아니다'로, 그리고 40%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여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약 10%가 '전혀 아니다'로 그리고 41.8%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표 5-14>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

<표 5-14-1>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1)

경찰의 임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업소출입을 못하게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9(8.2)
	그렇다	42(38.2)
	그저 그렇다	31(28.2)
	아니다	23(20.9)
	전혀 아니다	5(4.5)
계		110(100%)

41) 이러한 분류는 본래 비행청소년을 보호관찰하는 보호위원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즉 L. Ohlin은 보호관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조하는 처벌적 유형,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지적 유형, 이 양자를 절충하는 방어적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3가지 유형에 D. Glaser는 처벌적인 측면과 복지적 측면에 모두 소극적인 것을 수동적 유형을 첨가하였다(이동원(1995) 재인용). 이런 구분을 기초로 이동원(1995) 등은 한국에서의 보호위원의 역할연구에서 적극형, 무관심형, 갱생보호치중형, 통제감독치중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구분하려고 한다.

<표 5-14-2>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2)

유해업소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9(17.3)
	그렇다	54(49.1)
	그저 그렇다	23(20.9)
	아니다	11(10.0)
	전혀 아니다	3(2.7)
계		110(100%)

<표 5-14-3>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3)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1(10.1)
	그렇다	46(42.2)
	그저 그렇다	30(27.5)
	아니다	20(18.3)
	전혀 아니다	2(1.8)
계		109(100%)

<표 5-14-4>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4)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잘 감시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5(13.8)
	그렇다	38(34.9)
	그저 그렇다	34(31.2)
	아니다	19(17.4)
	전혀 아니다	3(2.8)
계		109(100%)

<표 5-14-5>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5)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여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5(4.5)
	그렇다	14(12.7)
	그저 그렇다	34(30.9)
	아니다	46(41.8)
	전혀 아니다	11(10.0)
계		110(100%)

<표 5-14-6> 통제감독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6)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9(8.2)
	그렇다	20(18.2)
	그저 그렇다	44(40.0)
	아니다	24(40.0)
	전혀 아니다	13(11.8)
계		110(100%)

그리고 유해업소 출입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갱생보호적인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항목은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응답자의 28.2%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49.1%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경찰관의 갱생보호적인 역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항목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응답자의 약 14.5%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도 20.9%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또한 36.4%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훨씬 많았다 (<표 5-15> 참조).

전반적으로 볼 때, 통제감독형의 경찰역할보다는 갱생보호형의 경찰역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더욱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역할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감독통제형보다는 갱생보호형 경찰관의 역할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5-15>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

<표 5-15-1>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1)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1(19.1)
	그렇다	46(41.8)
	그저 그렇다	31(28.2)
	아니다	11(10.0)
	전혀 아니다	1(0.9)
계		110(100%)

<표 5-15-2>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2)

경찰관의 목표는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을 잘 타일러서 이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6(23.6)
	그렇다	46(41.8)
	그저 그렇다	25(22.7)
	아니다	12(10.9)
	전혀 아니다	1(0.9)
계		110(100%)

<표 5-15-3>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3)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3(20.9)
	그렇다	40(36.4)
	그저 그렇다	30(27.3)
	아니다	16(14.5)
	전혀 아니다	1(0.9)
계		110(100%)

<표 5-15-4>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4)**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8(7.3)
	그렇다	42(38.5)
	그저 그렇다	41(37.6)
	아니다	16(14.7)
	전혀 아니다	2(1.8)
계		109(100%)

<표 5-15-5>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5)**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경찰관이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2(20.0)
	그렇다	35(31.8)
	그저 그렇다	39(35.5)
	아니다	12(10.9)
	전혀 아니다	2(1.8)
계		110(100%)

<표 5-15-6> **갱생보호형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태도(6)**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31(28.2)
	그렇다	54(49.1)
	그저 그렇다	18(16.4)
	아니다	6(5.5)
	전혀 아니다	1(0.9)
계		110(100%)

다음은 이러한 통제감독형과 갱생보호형의 항목을 바탕으로 위의 두 가지 측면, 즉 통제감독적 측면과 갱생보호측면을 모두 강조하는 유형을 '적극형'으로, 그리고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한 역할의 인식이 약한 유형을 '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표 5-16> 참조). 구체적으로 위의 통제감독형 척도(6개)와 갱생보호형 척도(6개) 각각에 대한 개인

의 응답점수를 합한 후 각각 전체 응답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두 척도 모두에서 평균점수 이상인 응답자는 적극형으로, 두 척도 모두 평균 이하인 응답자는 무관심형으로 분류하였다.

덧붙여 통제감독형 척도에서 평균점수 이상이고 갱생보호형 척도에서 평균점수 이하인 응답자는 통제감독강조형으로, 통제감독형 척도에서 평균점수 이하이고 갱생보호형 척도에서는 평균점수 이상인 응답자는 갱생보호강조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경찰관 역할에서 적극형을 선호하는 응답자수는 30(27.5%), 통제감독강조형을 선호하는 응답자수는 19명(17.4%), 갱생보호강조형을 선호하는 응답자수는 25명(23.1%), 그리고 무관심형은 34명(31.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 가지 유형에 대한 관계와 설문결과에 따른 분포는 <표 5-16>과 같다.

<표 5-16>

경찰역할의 유형

	통제감독의 강도	
	(강)	(약)
갱생(강) 보호의 강(약)도	적극형 30(27.5%)	갱생보호 강조형 25(23.1%)
	통제감독 강조형 19(17.4%)	무관심형 34(31.5%)

다음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선도에 관한 응답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표 5-17>). 먼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약 38.2%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9.1%나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 통제방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서 법적 또는 행정적 권위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23.6%로 대답하여 설득과 관용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아니다'라는 응답은 7.3%에 그치고 있어, 법적 또는 권위적 통제보다는 설득과 관용이 훨씬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25.5%다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유해업소를 출입함으로써 찍히게 될지 모르는 낙인에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5-17>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

<표 5-17-1>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1)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경찰의 선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4(3.6)
	그렇다	42(38.2)
	그저 그렇다	38(34.5)
	아니다	21(19.1)
	전혀 아니다	5(4.5)
계		110(100%)

<표 5-17-2>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2)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적 또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8(7.3)
	그렇다	28(25.5)
	그저 그렇다	40(36.4)
	아니다	26(23.6)
	전혀 아니다	8(7.3)
계		110(100%)

<표 5-17-3>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3)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설득과 관용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6(23.6)
	그렇다	53(48.2)
	그저 그렇다	23(20.9)
	아니다	8(7.3)
계		110(100%)

<표 5-17-4>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4)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부모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녀를 세심히 보호하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0(18.2)
	그렇다	51(46.4)
	그저 그렇다	25(22.7)
	아니다	11(10.0)
	전혀 아니다	3(2.7)
계		110(100%)

<표 5-17-5>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5)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8(25.5)
	그렇다	47(42.7)
	그저 그렇다	24(21.8)
	아니다	10(9.1)
	전혀 아니다	1(0.9)
계		110(100%)

<표 5-17-6>

경찰선도에 대한 태도(6)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유해업소출입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1(10.0)
	그렇다	38(34.5)
	그저 그렇다	28(25.5)
	아니다	28(25.5)
	전혀 아니다	5(4.5)
계		110(100%)

5) 경찰에 대한 기대역할과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활동

다음으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활동과 앞서 설명한 경찰에 대한 응답자의 역할 기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업소출입 경찰에 대한 기대역할의

4가지 유형, 즉 무관심형, 통제감독형, 갱생보호강조형 및 적극형과 경찰의 선도활동간의 관계는 일원변량분석에 의해 가능하다.

<표 5-18>에 따르면 경찰활동1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경찰의 선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적극형의 기대역할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무관심형의 기대역할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기대를 원하는 응답자들은 경찰의 선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대한 바와 같이 경찰활동2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적 또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통제감독강조형의 역할기대를 원하는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적극형, 갱생보호강조형 및 무관심형의 역할기대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역할유형에 관한 평균치의 차이에 대한 F값의 유의도(경찰활동1의 경우 3.23+; 경찰활동2의 경우 3.86+)가 유의미한 정도와 그렇지 않은 정도와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에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활동3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설득과 관용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바라는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적극형, 무관심형 및 통제감독강조형 등의 순이었다. 경찰활동4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부모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녀를 세심히 보호하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역시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바라는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제감독강조형, 적극형 및 무관심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활동5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원하는 응답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적극형, 무관심형의 순이었고 통제감독강조형의 역할기대를 강조하는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6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유해업소출입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통제감독형과 적극형의 역할기대를 원하는 응답자의 선호도와 무관심형과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원하는 응답자의 선호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대한 바와 같이 권위(경찰활동2)나 엄격한 처리(경찰활동6)를 강조하는 유형은 주로 통제감독강조형의 역할기대를 가진 응답자들이었고, 반면에 설득이나 관용(경찰활동3), 세심한 자녀의 보호(경찰활동4) 및 반성할 기회(경찰활동5)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가진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8> 경찰의 기대역할과 경찰의 선도활동간의 관계

변 인	경찰의 역할에 따른 유형별 평균(N)				F 값
	무관심형(34)	통제감독강조형(19)	갱생보호강조형(25)	적극형(30)	
경찰활동1	2.88	3.00	3.20	3.57	3.23+
경찰활동2	2.62	3.47	2.88	3.27	3.86+
경찰활동3	3.71	3.26	4.36	4.10	9.06***
경찰활동4	3.09	3.89	4.08	3.80	6.99***
경찰활동5	3.53	3.42	4.20	4.10	4.90**
경찰활동6	2.56	3.68	3.20	3.63	8.39***

(경찰활동의 유형에 관해서는 주⁴²⁾을 참조; + P<0.1, * P<0.05, ** P<0.01, *** P<0.001)

- 42) ① 경찰활동1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경찰의 선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② 경찰활동2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적 또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경찰활동3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설득과 관용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경찰활동4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부모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녀를 세심히 보호하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경찰활동5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⑥ 경찰활동6 :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I. 정책 건의안

1. 제도적 개선대책

1)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작성

지역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가) 제안의 이유

- ① 현재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는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지도’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⁴³⁾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地圖)가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퇴치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지도(有害業所地圖)라고 보여지며, 이것은 각 지역의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 ② 유해업소지도는 유해업소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서는 파출소, 학교, 교육청, 행정관청 등에서 파견되는 경찰관, 청소년 선도위원, 교사, 학부모 등에게 학생들의 교외생활을 돕는 현장조사의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 ③ 청소년 위원회의 유해업소 특구화 정책에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어 청소년의 비행·탈선의 예방에 기여한다.
- ④ 특정도시 또는 전국단위로 청소년 유해지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어느 동, 어느 도시가 청소년 생활환경상 가장 좋거나 그렇지 못한가를 평가·보도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청소년 환경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다.

43)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국세청 등의 「서울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 1999. 11. 24.

ㄴ) 구체적 내용

- ① 각 도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유해업소를 모두 조사하여 그 위치와 유해등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 ② 구체적으로 유해업소의 강도에 따라 A, B, C의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A급, 이용할 수는 있어도 심신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B급, 덜 영향을 미치면 C급으로 분류된다.
- ③ A급의 경우 취약시간대에 정북경찰관을 2인 1조로 고정배치하고, B급의 경우 정기순찰지역에 편입시켜 매일 3차례 이상 순찰을 돌고, C급의 경우 매일 1차례 이상의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④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작성에는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척도를 위해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 수, 유흥업소 분포율, 유해업소 신고율, 복지사범 단속 수, 정화실적 건수, 청소년 우범율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 지수화(指數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는 1년 또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작성됨으로써 지역간 경쟁의 유발을 통한 청소년 환경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경찰과 학교의 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ㄱ) 제안의 이유

- ① 현재 해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범죄예방교실'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연례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1999년에는 이 '범죄예방교실'의 운영실적은 1993년의 23,173회에 비하여 그 회수가 절반으로 줄

었다.⁴⁴⁾ 따라서 본격적인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교실’을 대체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에 관한 효율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②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유해정도가 급속히 증폭되어 가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속에서 청소년들을 법에 따라 유도하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경찰이 청소년들과 항상 밀착(密着)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ㄴ) 구체적 내용

- ①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출입에 관한 조언을 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 ② 소년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학교교사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의 예방 및 선도를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경찰의 학교내 여러 가지 활동, 즉 그룹토의나 경찰관련 수업 등을 통해 청소년에 의한 유해업소 출입의 유해성 및 실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 ④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절차
- a)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b) 설정된 목표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c)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와 공동으로 또는 교사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표 6-1> 참조).
 - d)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의 회의감이나 반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e) 특히 경찰·학교의 연계경찰관은 경찰대학 등 교육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44) 경찰청, 「경찰백서」(1998), p. 94.

- f) 마지막으로 경찰·학교의 연계경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차후에는 이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경찰·학교의 연계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

<표 6-1> 경찰·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경찰·학교 연계 세부 프로그램	담당자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범죄	경찰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실태	경찰관
유해업소 출입과 학업성취도	교사
유해업소 출입의 위험성과 파급효과	경찰관과 교사

ㄷ) 외국의 입법례

1983년 영국에서 시작된 경찰·학교 연계제도(Police-School Liaison Program)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경험, 관찰, 토의 등을 통해 학교와의 연계 경찰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미국, 기타 영연방 국가, 유럽, 태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⁴⁵⁾ 특히 미국의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 및 학교를 연계할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을 둬으로써 지역주민과의 협력체제하에서 범죄예방을 수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연락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나 사회질서 유지 및 홍보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경찰·학교 연계제도 (Police-School Liaison Program)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⁴⁶⁾

45) 박기남. 1996. 「영국의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소고(Police Schools Liaison Scheme) : 예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청을 중심으로」(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치안정책연구』 제6호, p. 168.

46) R. C. Trojanowicz and S. L. Dixon, *Criminal Justice and the Community* (Englewood

- a)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 b) 경찰과 청소년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 c)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사와의 협동활동을 개선한다.
- d)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개선한다.
- e)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각국의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2> 각국의 경찰·학교 연계프로그램 사례

국별	프 로 그 램	대상	방법
미국	· 「법률교육」 또는 「범죄방어교육」(Crime Resistance Education)제도 - 법질서의 필요성, 시민의 권리와 책임 등 - 범죄실태, 원인, 피해예방방법 등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 경찰과 학교사회과 교사 공동작성 · 교재작성
영국	· 「범죄예방교육」(Comprehensive School) 제도	11세에서 18세 소년	· 경찰과 학교사회과 교사 공동작성 · 교재작성
서독	· 「비행방지특별수업」제도	초·중· 고교생	· 경찰과 학교사회과 교사 공동작성 · 교재작성
일본	· 「비행방지고실」제도 * 1987년 - 12,000회 1,970,000 여명 참가	초·중· 고교생	· 경찰과 학교사회과 교사 공동작성 · 교재작성

자료 : 이완구 (1992:244)에서 재인용.

Cliffs: Prentice-Hall. 1974), pp. 301-304; 치안연구소, 「청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대책」, 경찰대학(1997), p. 50; 형사정책연구원(1994),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p. 99 등에서 재인용.

3)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청소년 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제안의 이유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역경찰관의 활동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유해업소 출입후의 청소년과 청소년의 가정의 지원, 즉 조언, 지도, 정보제공 및 상담처의 제공 등이나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연결망이라는 새로운 활동은 전문적인 조직에 의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년 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찰이나 교외활동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들만으로 유해업소 출입의 대상이 되는 1300만여명⁴⁷⁾이라는 방대한 청소년 인구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구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둘째, 청소년보호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던 가정이 오늘날 그 본연의 위기관리에 있어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향후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결손가족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급증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9개에서 400여개 정도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NGO의 하나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⁴⁸⁾을 어떻게 유기적

47) 이는 1996년 현재 총인구 45,545,282 명의 약 28.6%에 해당되는 숫자이다(http://www.youth.go.kr/uw/uw_disp.exe/data_room/s_data_room_1_056.html, 검색일: 2000년 8월 20일).

48)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없지 않으나 이것은 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초점이 중앙에서의 청소년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같은 업무에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관련기관들을 연계·조직할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다.

<표 6-3>

청소년 유해감시단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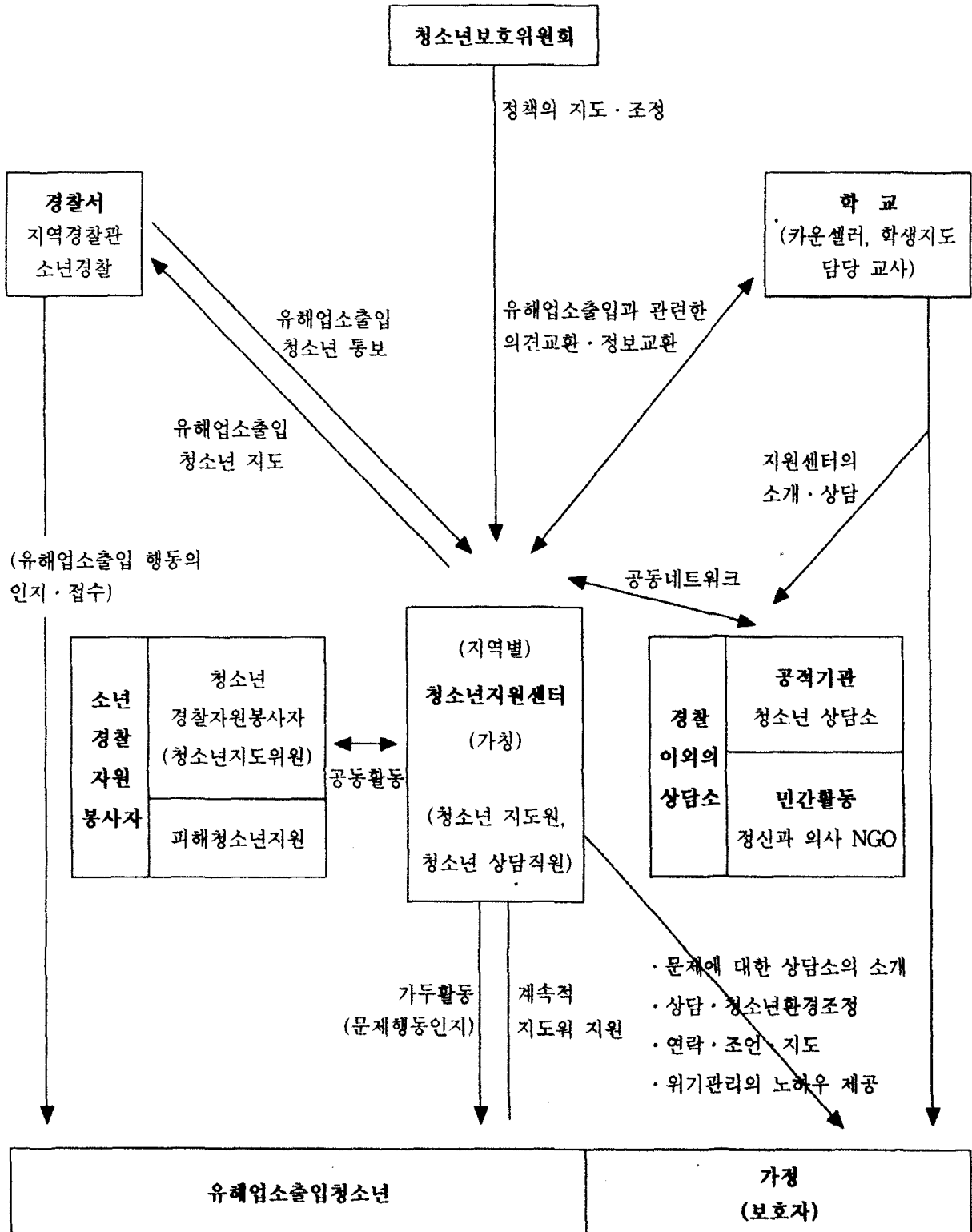
('99. 2. 현재)

시·도	계	학 교				시민단체
		소계	초	중	고	
서울	398	363	202	129	32	35
부산	40	30	-	-	-	10
대구	19	10	5	2	3	9
인천	9	2	1	-	1	7
광주	12	3	2	1	-	9
대전	20	16	6	7	3	4
울산	47	41	14	21	6	6
경기	30	8	1	3	4	22
강원	26	18	10	6	2	8
충북	26	21	4	11	6	5
충남	47	36	11	14	11	11
전북	51	41	24	12	5	10
전남	25	16	9	3	4	9
경북	54	43	9	15	19	11
경남	60	48	15	17	16	12
제주	9	3	-	-	3	6
합계	873	699	326	245	128	174

자료 : http://www.youth.go.kr/uw/uw_disp.exe/data_room/s_data_room_2_006.htm 검색일 2000. 3. 29)

<그림 6-1>

청소년지원센터(가칭)



자료 : 본 도표는 渡辺康弘, 「“子供を非行から守るために~ 少年非行の今日的課題と警察の取組”
 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51卷 第9號(東京, 1998), p. 151을 참조로 하여 작성되었음.

나) 내용

<그림 6-1>에서 보듯이 청소년지원센터는 경찰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 소년경찰 자원봉사자, 청소년상담소, 가정 및 유해업소출입청소년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서에 대해서는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지도해주고,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에 관한 지도를 받는다. 학교와는 유해업소출입청소년과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며 경찰자원봉사자들과는 공동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을 위해서는 가두활동을 계속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상담소의 소개, 청소년 관련 상담실의 소개 등의 일을 한다.

4) 경찰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 감독권의 환수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감독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찰로 환수되어야 한다.

가) 제안의 이유

- ① 청소년을 윤락가, 유흥가, 우범지대 등의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에 의해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이 선 불리 구역해제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실태를 보면 199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7곳이던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은 4개월 만인 1999년 말 서울 6곳, 광주 5곳, 순천 1곳 등 총 12곳이 줄어들었다.⁴⁹⁾
- ③ 또한 24시간 동안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금지구역'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제한구역'으로 완화된 곳이 서울에서만 9곳에 이르고, 반

49) 중앙일보, 1999. 11. 10 [http://news.naver.com/iop/news_view?](검색일 1999년 12. 14.)

면에 레드 존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포항시 용흥동을 포함한 2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⁰⁾ 이러한 청소년금지구역으로부터의 해제는 구청장의 고시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구역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ㄴ) 구체적 내용

- ①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특수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지역이다.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이 선불리 해제 또는 완화된 것은 1999년 7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의 감독권이 경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였다.
- ② 즉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 상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지정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의 지정권을 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경찰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 ③ 덧붙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유해지역 실태를 직접 점검한 후 자치구가 구역지정을 회피하는 경우라도, 경찰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red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의 시민단속반 교육의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부실한 시민 단속반에 대한 경찰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50) 중앙일보, 1999. 11. 10 [http://news.naver.com/iop/news_view?](검색일 1999년 12. 14.)

ㄱ) 제안의 이유

1997년 3월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7월에 개정되었지만 청소년 출입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회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흥업소에 대한 시민 단속반의 경우 교육미비와 경험미비로 단속의 효율성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 시민 단속반의 경우 단속교육의 미비로 현장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무요령을 몰라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⁵¹⁾
- b) 단속교육은 받았어도 경험미비로 단속시 업주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위축되어 제대로 임수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⁵²⁾
- c) 경험 없는 대규모 단속인력이 한 조로 몰려다니는 경우 쉽게 '단속사실'이 노출되는 경우⁵³⁾
- d) 손님에게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10대 손님이 영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더라도 경찰이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⁵⁴⁾
- e) 한 업소에 단속반이 서투르게 조금 오래 머무름으로써 타업소로 즉시 단속정보가 노출이 되는 경우

ㄴ) 대책

- a) 경찰에 의한 철저한 시민단속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시민 단속반의 경우 겨우 4시간 동안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 근무자세를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나⁵⁵⁾, 거의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1) 중앙일보, 1999. 11. 30; 경향신문, 1999. 11. 30.

52) 일부 시민단속반원의 경우 업소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중앙일보, 1999. 12. 14).

53) 경향신문, 1999. 11. 30.

54) 경향신문, 1999. 11. 30.

55) 중앙일보, 1999. 11. 30.

ㄴ) 대책

- a) 경찰에 의한 철저한 시민단속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시민 단속반의 경우 겨우 4시간 동안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 근무자세를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나⁵⁶⁾, 거의 단속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 b)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의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인력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⁵⁷⁾
 - i) 대형참사를 빚은 인천시 중구 인현상가에는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주점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모두 2,782곳이나 인천 중구청이 올해 단속한 실적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41건과 담배판매 7건을 포함한 모두 90건에 지나지 않았다.
 - ii) 서울 신촌을 포함하는 서대문구청의 경우 노래방 220곳과 유흥업소를 제외한 청소년 유해업소시설은 모두 5백 곳이 넘지만 이를 지도·단속하는 구청인력은 문화체육과 직원 2명 뿐으로 올해의 단속건수는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 iii) 서울 성북구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 244곳 중 단속은 6건에 머무르고 있다.
- c) 시민단속반에 반드시 경찰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게임방의 경우,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경우가 많아 구청직원을 비롯한 시민단속반이 상대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구청공무원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가 기피보직 1호로 꼽히고 있는 경우도 많다.⁵⁸⁾ 따라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반드시 단속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영터리 주민등록번호를 대더라도 경찰관이 경찰전산망과 접속하여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6) 중앙일보, 1999. 11. 30[http://news.naver.com/iop/news_view?i, 검색일 1999. 12. 14].

57) 경향신문, 1999. 11. 30[http://news.naver.com/iop/news_view?id, 검색일 2000. 1. 4].

58) 중앙일보, 1999. 11. 1[http://news.naver.com/iop/news_view?i, 검색일 2000. 1. 4].

6)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책임의 등급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등급화 할 필요가 있다.

가) 개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감의 고양은 청소년보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해업소출입과 관련한 가벼운 비행은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등급화된 처우는 청소년의 책임감 고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출입의 책임을 주로 업주에게만 돌림으로써 청소년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유해업소 출입청소년에게 적용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차별화는 유해업소출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 자신의 책임의식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등급화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관계기관 단체의 직원, 각급 학교의 교사, 종교인, 부녀단체회원 및 검찰 등의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등급화된 처우는 주로 소년법원에서 청소년을 처리하는 단계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경찰의 전환(diversion)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벼운 비행은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벗기기 어려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내용

구체적으로 등급화된 처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참조로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59) 이러한 등급은 미국의 '청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청'(OJJ에: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발간한 '연방 소년사법 시행계획'(National Juvenile Justice

- ① 유해업소출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 전환프로그램, 보호위주의 감시 실시 등과 같은 즉각적인 개입(immediate intervention)을 실시한다.
- ② 비행을 한번 이상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말구금, 집중감시, 보호관찰, 병영식 캠프 등의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s)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청소년 비행자들에게는 지역사회내의 강력한 소규모의 처우 시설이나 직업학교나 캠프 등에 구금하는 엄중한 감시(secure confinement)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홍보활동대책

1) 청소년 유해업소 마크의 개발 및 배포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마크를 개발·배포하여야 한다.

가) 제안의 이유

- a)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가 산재한 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red zone)이나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안전지역(green zone)은 존재하나, 특정업소가 유해업소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특정 표지나 로고(logo) 또는 마크(mark)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 b) 현재의 미성년자 출입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수많은 경고판이 청소년 유해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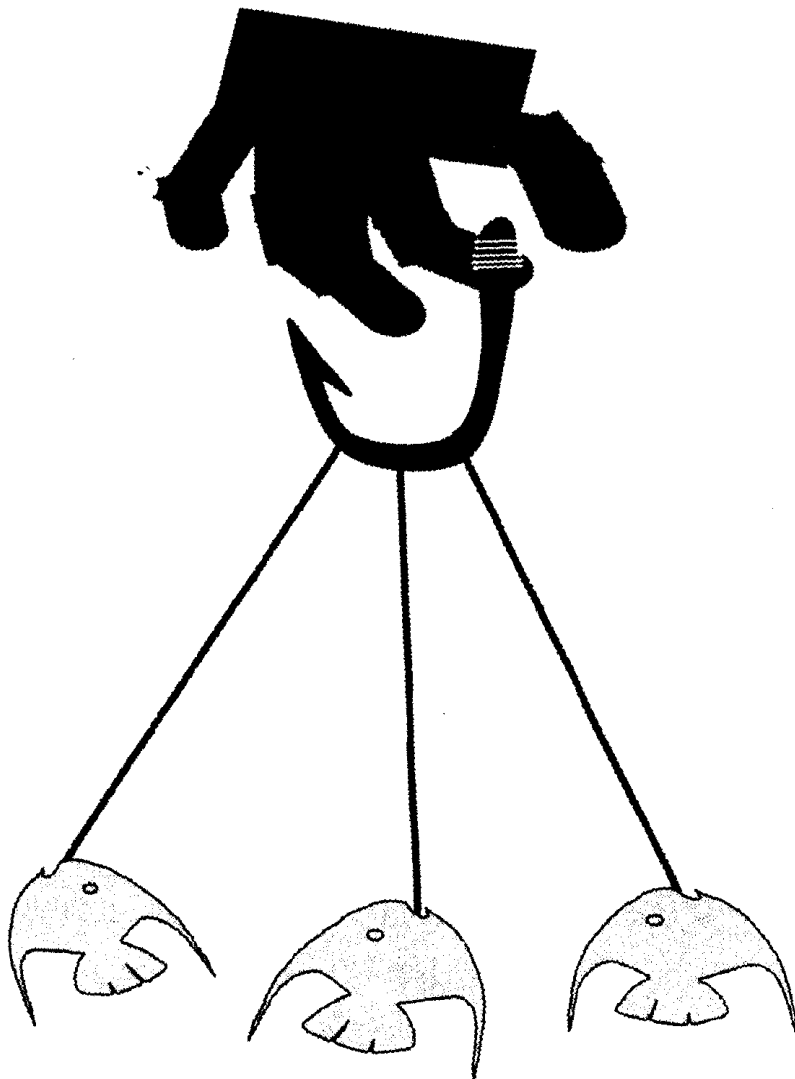
Action Plan)에 따르면 이러한 차등적인 처우가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1996), Combating Violence and Delinquency: The National Juvenile Justice Action Plan.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U.S. Dept. of Justice. 주희종(1998:147-149) 재인용).

에 많이 부착되어 있으나 시각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질구레한 내용을 자세히 쓴 부착물보다는 단순하고 쉽게 인식이 가능한 마크나 로고 또는 표지를 이용한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6-2> 참조).

- c)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거부반응을 증폭시키고 청소년층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에게도 청소년 유해업소의 피해갈 수만 있다면...

<그림 6-2>

청소년 유해업소마크의 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쉽게 지각됨으로써 전국민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에 기여하도록 한다.⁶⁰⁾

ㄴ) 구체적 내용

- a) 유해업소를 상징하는 마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해성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업소 마크를 제작, 홍보,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 b) 다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유해업소를 상징하는 야광처리가 가능한 마크를 개발 또는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부정적 이미지화 전략을 펼친다.
- c) 청소년 마크의 배포에 관하여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나 경찰서장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정 유해업소에 부착하도록 한다.
- d) 상기의 유해업소 마크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지속·극대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마크를 개정하여 대안적인 마크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도록 한다.

60) 예로서 <그림 6-2>를 참조하라.

VII.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의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역할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통하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로는

- ①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정리하고, 유해업소의 개념과 확산배경을 규명하며,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②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③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담당하는 소년경찰의 조직과 역할에 관하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려고 하였다.
-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개입에 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 ⑤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관한 경찰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 1) 본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란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녀 청소년에게 범죄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업소”로 간주하였다.
- 2)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해환경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

치는 유해환경의 실태파악에만 주력함으로써 실제로 이들 유해환경 또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직접 선도하는 중요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 3) 유해업소의 확산배경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서비스산업이 과잉적으로 비대함에 따라 유해업소가 증가하였다는 산업구조적 측면과 급속한 산업화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 가치체계의 상실과 사회규범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아노미 상태가 유해업소를 증가시켰다는 대중문화적 측면이 있다.
- 4)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설명하는 제요인에는 공간적 인접성, 제도적 영역에서 적용하지 못한 청소년을 유해업소로 몰아가는 방출요인 및 공적통제의 약화로 인한 강화요인 등이 있다.
- 5)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유해업소가 이곳을 출입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3.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에게 대한 경찰개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은,

- ① 청소년들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국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
- ②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은 반윤리적이므로 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사법기관이 유해업소에 대하여 개입해야 한다는 도덕주의
- ③ 유해업소출입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춘기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경찰이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개별적 사법정의
- ④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이고 엄격한 처분은 해당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찰의 개입과정에서 낙인을 찍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낙인이론 등이 있다.

4. 소년경찰의 국가간 비교: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을 다루는 미국 소년경찰과 일본 소년경찰의 조직과 역할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활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경찰협의회와 청소년의 직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경찰협의회의 다양한 형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을 위해 사회봉사기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경찰은 이들 기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왔다. 따라서 한국의 소년경찰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도활동들, 즉 계속보호, 사후보호, 상담보호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경찰의 개입에 관한 설문조사

- 1)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표본추출을 위하여 의도적 표집이 이용되었다.
- 2) 유해업소 출입에 관하여 단란주점, 전화방, 숙박업소, 윤락업소 등에 출입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나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노래연습장, PC게임방과 전자오락실 등은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광범위하게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대부분(90%)이 경찰관을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어떤 제재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 4) 유해업소 출입시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비율이 자기자신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사회제도에 책임을 있음을 지적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27.9%).
- 5) 유해업소 출입의 동기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1/3(32.1%)이 '심심해서'라고 대답함으로써 앞서 지적한 유해업소출입에 대한 책임소재가 상당부분 자기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와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은 13.1%나 됨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의 책임소재가 사회제도에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 6)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경찰의 역할을 통제감독하는 측면과 갱생보호측면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청소년들은 감독통제형보다는 갱생보호형 경찰관의 역할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7) 일원변량분석에 따라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활동과 경찰에 대한 기대역할의 4가지 유형, 즉 무관심형, 통제감독형, 갱생보호강조형 및 적극형 등의 유형들간의 관계를 보면, 권위나 엄격한 처리를 강조하는 유형은 주로 통제감독강조형의 역할기대를 가진 응답자들이었고, 반면에 설득이나 관용, 세심한 자녀의 보호 및 반성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갱생보호강조형의 역할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6. 정책건의의안

- 1) 지역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 2) 경찰과 학교의 청소년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3) 청소년 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감독권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찰로 환수되어야 한다.
- 5)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부실한 시민 단속반에 대한 경찰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6)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등급화 할 필요가 있다.
-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마크를 개발·배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문참고문헌>

- 강대근, 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청년연구』 제7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 (편). 1998. 『警察防犯論』. 警察大學.
- 경찰청, 2000. 『경찰백서』.
- _____, 1999. 『경찰백서』.
- _____, 1998. 『경찰백서』.
- 경향신문, 1999. 11. 30.
- 권이종, 199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이론과 연구모형」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pp. 131-258. 체육청소년부.
- 김경동·이은죽, 1999.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 김문조, 1992. 「청소년 유해시설 및 장소의 실태와 개선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pp. 259-380. 체육청소년부.
- 金文朝·李聖植, 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 비행」 『民族文化研究(고려대)』, vol. 27, pp. 181-216.
- 金甫煥, 1992, 「소년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찰의 전환처분을 중심으로」 『治安論叢』 제9집, pp. 163-199.
- 金成聞, 1992. 『青少年犯罪豫防을 위한 韓國少年警察의 役割改善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승구, 1994. 『外國의 少年犯罪處理制度和 實態: 日本制度를 中心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우, 1994. 『少年非行의 司法的 統制에 관한 研究』 전남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덕성여대) 제3권, pp.

133-163.

- _____, 1987. 「청소년 주변유해환경과 비행선도방안」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주최 제52회 청소년 논단 발표논문.
- 김준호·이동원, 1995. 『보호위원의 보호관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재봉,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원인변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4합병호, pp. 73-99.
- 노상우, 1993. 「청소년 유해환경과 교육학적 대응」 『한남교육연구』(창간호), pp. 69-85.
- 도종수, 1991. 「청소년문제」, 고영복(편) 『현대사회문제』, pp. 165-302. 사회문화연구소.
- 도종수 외, 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도종수·이광호·임상숙·김영아, 199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5호, pp. 85-96.
- 문화관광부, 1999. 『청소년백서』.
- _____, 1998. 『청소년백서』, pp. 429-509.
- 박기남, 1996. 「영국의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소고(Police Schools Liaison Scheme):에 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청을 중심으로」(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치안정책연구』 제6호, pp. 166-177.
- 서울YMCA, 1990. 『향락문화추방 시민운동 보고서』, 서울YMCA시민지구운동본부.
-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국세청 등의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에 관한 기자회견발표문, 1999. 11. 24.
- 유수현, 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칭협』 제13권 4호, pp. 14-24.
- 유재천, 1989. 「청소년 성교육의 유해환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서울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주최 제1회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
- 유혜경, 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강수, 1980. 『한국사회』. 서울:민음사.
- 이광호, 1992. 「청소년유해환경이 이해와 규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李揆美, 1991. 「청소년 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私學』 통권59호, pp. 16-25.
- 이동원, 1995. 「보호선도위원의 활동과 역할인식」 『형사정책연구소식』(한국형사정책연구

- 원) 3·4월호, pp. 10-18.
- 이상현, 1997. 『少年非行學』 박영사.
- 이완구, 1992.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주치안을 위한 치안역량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刑事政策』(한국형사정책학회) 제6호, pp. 213-249.
- 이중환, 1989.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매체」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YMCA 시민자구운동본부.
- 鄭榮錫·申洋均, 1996. 『刑事政策』 서울: 법문사.
- 조상락, 1994.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향」 『부산교육』 제271호, pp. 37-43.
- 주희중,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28호 후기. 청소년개발연구원. pp. 130-153.
- 중앙일보, 1999. 11. 10 [http://news.naver.com/iioop/news_view?](검색일 1999년 12. 14.); 1999. 11. 1; 1999. 11. 30; 1999. 12. 14.
-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백서』.
- _____, 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치안연구소, 1997.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경찰대학.
- 표갑수, 1998. 『아동·청소년 복지론』. 청주: 청주대출판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 한명섭, 1991.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보고」 『한국의 청소년과 교육환경』. 대한 YMCA연맹.
- 형사정책연구원,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김준호 외 췌.
- _____, 1994.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 한승희, 이용교, 이해연, 맹영임, 1990.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준상, 1991.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정책」 『한국의 청소년과 교육환경』. 대한 YMCA연맹·대한YWCA연합회.

<영문참고문헌>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Y.: Basic Books.
- Champion, Dean J. 1990.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Columbus, OH: Merrill Publishing Company.
- Evans, P. B, and M. Timberlake. 1980. "Dependence, Inequality and the Growth of the Tertiary: A Comparative Analysis of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5.
- Gibbons, D. C. 1981. *Delinquent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hn, Paul H. 1984. *The Juvenile offender and the law*. Cincinnati, OH: Anderson.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ffery, C. R. 197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everly Hills: Sage.
- Kenney, John and Dan G. Parsuit. 1979. *Police Management Planning*.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Kratcoski, Peter C. and Lucille D. Kratcoski. 1979. *Juvenile Delinquency*. New Jersey: Prentice-Hall.
- Lemert, Edwin M. 1951. *Social Pathology: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Y.: McGraw-Hill.
- _____, 1981. "Issues in the Study of Devia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22:285-305.
- Lipson, Karin. 1982. "Cops and TOPS: A Program for Police and Teens that Works." *Police Chief* 49:45-46.
- Litton, Gilbert, and Linda Marye. 1983. *An evaluation of the juvenile diversion program in the Orleans Parish District Attorney's office: A preliminary impact evaluation*. New Orleans, LA: Mayor's Criminal Justice council.
- Lundman, Richard J. 1974. "Routine Police Arrest Practices" *Social Problems* 22:

127-44.

- Matza, D. and G. M. Sykes. 1961. "Juvenile Delinquency and Subterranean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712-720.
- McCarthy, Francis B., and James G. Carr. 1980. *Juvenile law and its processes*. Indianapolis, IN: Bobb-Merrill.
- Merton, Robert K.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ound, Roscoe. 1960. "Discretion, Dispensation, and Mitigation: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 Special Case."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35:936.
- Shaw, Clifford and Henry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egel, Larry and Joseph Senna.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Belmont, CA: Wadsworth.
- Sutherland, Edwin H. & Donald R. Cressey. 1978. *Criminology*.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 Trojanowicz, Robert C. and S. L. Dixon. 1974. *Criminal Justice and the Commun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Trojanowicz, Robert C. & Merry Morash. 1992. *Juvenile Delinquency: Concepts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rojanowicz, Robert C. & Hazel Harden. 1985. *The Status of Contemporary Community Policing Program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Neighborhood Foot Patrol Center.
- Williams, Levi. 1984. "A police diversion alternative for juvenile offenders." *Police Chief* 51:54-57.
- Zajonc, R.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

<일문참고문헌>

- 内山絢子. 1985. 「風俗環境と少年非行」 『法律時報』 第57卷 第7號, pp. 13-17.
- 藤本哲也. 1987. 「有害環境の規制とパターンナリズム」 『法學新報』 第93卷 第6・7・8號, pp. 173-193.
- _____. 1985. 「有害環境と有害性の概念」 『法律時報』 第57卷 第7號, pp. 18-21.
- 柳本正春. 1994. 『米・英における少年法制の變遷』. 東京: 成文堂.
- 菊地和典. 1994. 『日英對譯 少年保護事件の手引(主要法令・用語付)』. 東京: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森下 忠. 1993. 『刑事政策大綱』. 東京: 成文堂.
- 柳本正春. 1994. 『米・英における少年法制の變遷』. 東京: 成文堂.
- 渡辺康弘. 1998. 「少年非行の今日的意味と少年警察」 『警察學論集』 第51卷 第6號, pp. 26-47.
- _____. 1998. 「“子供を非行から守るために ~ 少年非行の今日的問題と警察の取組” について」 『警察學論集』 第51卷 第9號, pp. 135-154.

<인터넷 사이트>

- http://www.youth.go.kr/uw/uw_disp.exe/data_room/s_data_room_1_056.htm(검색일: 2000. 3. 29, 200. 8. 20)
- http://www.youth.go.kr/uw/uw_disp.exe/home_con.html(검색일: 2000. 3. 28)
- http://www.youth.go.kr/bad_thing/s_bad_thing_2_004.html(검색일: 2000. 1. 31)
- <http://www.npa.go.kr/h6-1-3.htm> (검색일: 2000. 1. 31)
- http://news.naver.com/iiop/news_view? (검색일: 1999. 12. 14)

* 다음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에 V표 또는 간략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신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3. 당신은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가?

- | | |
|-------------------|-------------------|
| _____ 1) 무학 | _____ 2) 초등학교중퇴 |
| _____ 3) 초등학교 졸업 | _____ 4) 중학교 재학중 |
| _____ 5) 중학교 중퇴 | _____ 6) 중학교 졸업 |
| _____ 7) 고등학교 재학중 | _____ 8) 고등학교 중퇴 |
| _____ 9) 고등학교 졸업 | _____ 10) 대학교 재학중 |

4. 당신의 부모님은 현재 다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표시하십시오.

- 4-1. 아버지의 경우 : _____ 1) 친아버지 계심
 _____ 2) 계부가 계심
 _____ 3) 돌아가심
 _____ 4)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지 않음
 _____ 5) 고아

- 4-2. 어머니의 경우 : _____ 1) 친어머니 계심
 _____ 2) 계모가 계심
 _____ 3) 돌아가심
 _____ 4)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지 않음
 _____ 5) 고아

5.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아래의 보기에서 플라 각각 그 번호를 쓰시오.

5-1. 아버지 교육정도 () 번

5-2. 어머니 교육정도 () 번

- | | | |
|------------|-----------|--------------|
| 1) 무학 | 2) 초등학교중퇴 | 3) 초등 학교 졸업 |
| 4) 중학교 중퇴 | 5) 중학교 졸업 | 6) 고등학교 중퇴 |
| 7) 고등학교 졸업 | 8) 대학교 중퇴 | 9) 대학교 졸업 이상 |

6. 당신 가정의 월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_ 1) 50만원 미만

_____ 2) 50만원 - 100만원 미만

_____ 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_____ 4) 150만원 - 200만원 미만

_____ 5) 200만원 - 300만원 미만

_____ 6) 300만원 이상

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1) 대단히 만족	2) 만족 하는편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불만족	5) 대단히 불만족
1) 가정생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학교생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학교선생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친구관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우리사회전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자기자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거나 직접 구체적으로 쓰시오.

8-1. 아버지의 직업 ()번

8-2. 어머니의 직업 ()번

- | | | | |
|----------|----------------------------------|----------------|----------------|
| 전문직 | 1) 의사 | 2) 약사, 간호사 | 3) 변호사, 판사, 검사 |
| | 4) 대학교수, 연구직 | 5) 교사, 학원강사 | 6) 언론인, 방송인 |
| | 7) 종교인, 예술가 | 8) 기타 전문직() | |
| 관리직 | 9) 기업체 경영주(10인 이상 고용) | | |
| | 10) 대기업체 간부(부장이상) | | |
| | 11) 고급공무원(중앙관서 과장이상, 지방관서 국장 이상) | | |
| | 12) 사회단체 간부 | 13) 군인(영관급 이상) | |
| | 14) 경찰(경정 이상) | 15) 기타 관리직 () | |
| 사무직 | 16) 회사원, 은행원 | | |
| | 17) 일반공무원(사무관 이하) | | |
| | 18) 사회단체 직원 | | |
| | 19) 군인(위관급 이하) | | |
| | 20) 경찰(경감 이하) | | |
| | 21) 기타() | | |
| 판매, 서비스직 | 22) 소규모 가게 주인 | | |
| | 23)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 | |
| | 24)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 | |
| | 25) 판매점원 | | |
| | 26) 외판원 | | |
| | 27) 수위, 미화원 | | |
| | 28) 고물상 | | |
| | 29) 행상, 노점상 | | |
| | 30) 파출부 | | |
| | 31) 서비스직 점원 | | |
| | 32)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운영 | | |
| | 33) 기타() | | |
| 생산직 | 34) 생산감독(주임, 반장) | | |
| | 35) 공장근로자 | | |
| | 36) 건축노동자 | | |
| | 37) 단순노동자 | | |
| | 38) 자동차운전자, 중장비운전자 | | |
| | 39) 기타() | | |
| 기 타 | 40) 무직(가정주부) | 41) 정년퇴직 | 42) 기타() |

9-4. 귀하가 유해업소에 출입했다면 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_____ 1)공부가 지겨워서 | _____ 2)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
| _____ 3)심심해서 | _____ 4)친구가 가자고 해서 |
| _____ 5)호기심에서 | _____ 6) 돈을 벌기 위해서 |
| _____ 7)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이 있어서 | _____ 8)기타 이유로() |

10. 다음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출입과 관련하여 경찰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경찰서에서나 주변에서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다루는 경찰관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오.

- | | | | | |
|-----|-----|-----|-----|-----|
| 1) | 2) | 3) | 4) | 5) |
| 매우 | | 그저 | | 전혀 |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아니다 |

- | | | | | | |
|--|-------|-------|-------|-------|-------|
| 1)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업소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 유해업소를 출입하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3)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4) 경찰관의 주된 임무는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잘 감시하여 사회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5)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을 감독하고 통제하여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6)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__
- 7) 경찰관의 임무는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_
- 8) 경찰관의 목표는 유해업소를 출입
 하는 청소년을 잘 타일러서 이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청소년
 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_
- 9)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__
- 10)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_____
- 11)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경찰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_____
- 12) 경찰관은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_____

11. 경찰관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왼쪽의 항목을 읽어보고 오른쪽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매우		그저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 1)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경찰의 선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_
- 2)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적 또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__
- 3)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법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설득과 관용을 가지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__
- 4)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부모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자녀를 세심히 보호하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_____
- 5)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보다는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_____
- 6)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_____

12. 유희업소에서 또는 유희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을 목격하거나 직접 본인이 경험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13. 유희업소 출입 청소년을 다루는 경찰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간략히 말해 주십시오.

14. 유희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간략히 말해 주십시오.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